Hi Seoul SOUL OF ASIA 창의 시정 서울을 움직이는 힘

발행인 : 서 울 특 별 시 장
편집인 : 홍 보 기 획 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람	기관의장

제2848호 2008. 7. 10.(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08-1269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08-1281호 서울특별시 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안) 입법예고 ·····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 : //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 : 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람										

서울특별시

제2008-1286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08-1293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08-1294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제2008-129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제2008-129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

◈ 고 시
제2008-22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 10
제2008-226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 19
제2008-2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 19
제2008-2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23
제2008-229호 하천구역의 결정(폐지) ····· 24
제2008-23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 26
제2008-231호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6
제2008-232호 2008년도 하반기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 29
제2008-233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 29
제2008-234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 변경 ···· 35
제2008-2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 49
제2008-236호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 49

◈ 공 고
제2008-1220호 2008년도 제9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53
제2008-1252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 ····· 55
제2008-125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계획 ····· 55
제2008-125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 56
제2008-1263호 패션디자인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59
제2008-1264호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 ····· 59
제2008-127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여부 심의 예고 ····· 60
제2008-1279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 60
제2008-12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 61
제2008-1284호 다단계판매업자 변경등록신고 ····· 62
제2008-12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 63
제2008-1290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등록 ····· 64
제2008-1295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 ····· 64

◈ 구 고 시
제2008-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종로구) ····· 66
제2008-4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작성(중구) ····· 70
제2008-43호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성동구) ····· 70

제2008-7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성북구) ····· 72
제2008-3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강북구) ····· 73
제2008-3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노원구) ····· 73
제2008-38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마포구) ····· 74
제2008-2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구) ····· 76
제2008-43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강서구) ····· 77
제2008-44호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강서구) ····· 78
제2008-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강서구) · 78
제2008-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서울교육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구) ····· 79

◈ 구 공 고
제2008-425호 아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사완료(마포구) ····· 80
제2008-4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동작구) ····· 80

◈ 사업소고시
제2008-121호, 122호, 12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86
제2008-124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87

◈ 사업소공고
제2008-7호 방염처리업 등록(양천소방서) ····· 88
제2008-8호 소방시설업 등록(강서소방서) ····· 88
제2008-2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적용법규 정정 행정처분(경고)(구로소방서) ····· 88
제2008-1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영등포소방서) ····· 89
제2008-15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서초소방서) ····· 89
제2008-28호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 등록(강남소방서) ····· 89

◈ 정 정 ····· 91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69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의 구성
- 도시·교통,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등 3개 분과로 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 3명이 각 분과위원장을 겸임함.

나. 기획조정위원회 운영
-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등의 기능 수행

다. 기술자문단 운영
-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세부 전문분야별 기술지원과 민간기술의 동향 파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 6321-4288, FAX: 3707-9729, E-mail : chohj@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1호

서울특별시 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지하철 운영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 양공사에 위탁하여 이용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고 철도시설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나.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라.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사무위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 : 02)3707-9719 FAX : 02)3707-9728, E-mail : happyline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6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본요건인 면적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을 정함.
나. 진흥지구별 원활한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이 진흥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할 수 있도록 함.
다. 권장업종시설 및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라. 진흥계획 집행상황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 진흥계획의 평가시기 및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업지원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5층, (우)100-750, 전화 3707-9316, FAX 3707-9369, E-mail : wandoleech@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3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퍼센트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함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 및 학교의 책무를 정함

다. 시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과 관련된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마. 기후변화에 관한 시책의 결정·집행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혜택 등을 부여 할 수 있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에서 정하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함

자. 시 및 자치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카. 시는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추진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적응대책 수립시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에너지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전화: 2115-7714, FAX: 2115-7729, E-mail : kimch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4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화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의 책임자를 위원장에서 간사로 변경

다. 가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수료의 납부방법 중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수입증지로 일원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1-1 남산별관 전화: 02)2115-7480~2, FAX : 02)2115-7499, E-mail : bum7410@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수도요금 업무의 전산화와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상수도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수도사업소 통·폐합 및 관할구역과 명칭을 조정하고,
   나. 상암119안전센터 및 교통방송 외국어FM 신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제개편 등 실·국별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관련부서의 직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다. 일부 기관(부서)의 기구명칭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민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
      ○ 상수도사업본부의 4개부 19개과를 4개부 22개과로 변경(창의과, 아리수판매과, 계약심사과 신설)
      ○ 중부·서부·동부·강서·남부수도사업소의 기존의 4개과에 각 사업소 별로 현장민원과를 신설하여 각각 5개과로 변경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2개과에 수도박물관을 신설하여 3개과로 변경
      ○ 상수도연구원의 2개부 9개과를 1심사관 2개부 11개과로 변경(심사평가관, 고도정수처리과, 하수계획과 신설)
   나. 행정수요 변동을 반영한 직제조정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의 운영사무소를 폐지하고, 사무는 기존의 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로 각각 이관
      ○ 교통정보센터 : '팀'단위 조직에서 '과'단위 조직으로 격상
      ○ 교통방송국 : 외국어 FM방송 신설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
      ○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 경영지원부 신설
      ○ 소방재난본부 : 마포소방서 관할에 상암119안전센터 신설
      ○ 한강사업본부 : 기존의 특화사업 2개과를 3개과로 변경
   다. 기구명칭 변경
      ○ 경영기획실 :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담당관」으로
      ○ 도시기반시설본부 : 「창의혁신과」를 「창의과」로
      ○ 시립대 : 「인문과학연구소」를 「도시인문학연구소」로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진료과」를 「동물병원」으로
   라. 개방형직위 추가 지정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신규지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전화 : 731-6151, FAX : 731-6309, E-mail : harrukki@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7월 1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업무의 전산화와 급수공사 물량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수도사업소의 통·폐합을 통한 정원 339명과, 기관별·기능별 조직진단 결과 잉여인력 8명을 포함한 정원 347명을 감축하는 한편, 상암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직 24명 및 교통방송국 외국어FM방송 신설에 따른 29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294명을 감축하는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나. 푸른도시국 강북대형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녹지직렬 확보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동일직급내 직렬변경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전화 : 731-6151, FAX : 731-6309, E-mail : harrukki@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문화재 지정 내용

연번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5호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法住寺 水晶庵 石佛坐像)	1軀	석조	전고 217cm 불상고 97cm 대좌고 120cm 두고 33cm 슬폭 76cm 슬고 16.5cm	통일신라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6호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1幅	견본 채색	세로155.8cm 가로 64.8cm	19c	
3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7호	희경루방회도 (喜慶樓枋會圖)	1幅	견본 채색	세로 98.5cm 가로 76.8cm	17c이후	
4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	2권 1첩	저지	세로 26.3cm 가로 10cm	14c 후반	
5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9호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류 (地藏庵 木 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類)	-	-	-	-	서울시 종로구 창신 2동 626-3 (한국불교 태고종 지장암)
	269-1	① 화엄경소(華嚴經疏) 권 3~4, 9~10, 13~14, 33~34, 37~38, 63~64, 67~68, 69~70, 71~72, 97~98, 99~100, 117~118,	24권12책 (선장)	저지	세로 30.8cm 가로 20.7cm	1629~ 1631년	
	269-2	② 불명경(佛名經) 권 2,3	2권 2책 (가철), 낱장 다수	저지	세로 38.2cm 가로 27.4cm	1242년 판각 17세기 인출	

연번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5	269-3	③ 오천오백불명신주죄장멸죄경 (五千五百佛名神呪除障滅罪經) 권 1, 3, 6	3권 3책, (가철) 낱장 다수	저지	세로 38.1cm 가로 27.5cm	1240년 판각 17세기 인출	서울시 종로구 창신 2동 626-3 (한국불교 태고종 지장암)
	269-4	④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 1, 2, 3, 4, 6	5권 5책 (낱장)	저지	세로 20.2cm 가로 13.8cm	17세기 인출	
	269-5	⑤ 각종 다라니(陀羅尼)	약 741장	저지	32.8 x 55.5 外	조선후기	
6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0	지장암 신중도(地藏庵 神衆圖)	1幅	견본 채색	총고146.5cm 총폭 221.5cm 화고 141cm 화폭 215.5cm	1889년	서울시 종로구 창신 2동 626-3 (한국불교 태고종 지장암)
7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1	지장암 감로도(地藏庵 甘露圖)	1幅	견본 채색	총고183.5cm 총폭 231cm 화고 165cm 화폭 198.5cm	1889년	서울시 종로구 창신 2동 626-3 (한국불교 태고종 지장암)

2. 문화재 지정 사유

1)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法住寺 水晶庵 石佛坐像)

이 석불좌상은 충북 법주사 뒤 언덕 위에 있는 수정암지에 흩어져 있었던 파불을 옮겨와 동국대학교에서 복원한 불상이다. 옮길 당시 광배는 일부만 남아있었고, 대좌는 반 이상 없어졌으며, 불상 자체도 깨어진 부분이 많았지만 현재는 불상과 대좌를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여 통일신라(9세기) 당시의 석불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신(佛身)은 신체에 비하여 상체가 다소 크지만 무릎폭이 넓고 어깨가 벌어져 안정감이 있다. 얼굴은 살찐 둥근 모습으로 턱부분이 둥글어 양감(量感)을 느끼게 하며, 굵은 나발(螺髮)의 머리에는 육계(肉髻)가 낮게 솟아 있다. 이마 한 가운데는 백호(白豪)가 박혀있고 눈은 반쯤 감고 있어 명상에 잠겨있는 듯하다. 활(弧)형의 부드러운 눈썹과 어어진 코는 비량(鼻梁)이 넓은 편이지만 보수가 많이 되어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다. 입은 적은 편으로 꾹 다물고 있는데, 얼굴의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편이다. 목은 원래 떨어져 있던 것을 붙여 놓은 것이다.

신체는 어깨가 좁고 경직되었으며 다소 위축된 느낌을 준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오른 무릎 위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배 부근에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인 채 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는, 전형적인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있다. 착의법(着衣法)은 양 어깨를 모두 감싸는 통견식(通肩式) 대의(大衣)를 걸치고 그 안에는 내의(內衣)를 입고 있다. 옷주름은 양팔에서 몸통 쪽으로 사선을 이루면서 주름이 흘러내리고 있고, 두 다리 사이에서도 넓게 U자를 이루면서 흘러내렸다. 팔에 걸쳐 흘러내린 옷주름과 무릎 위로 흘러내린 옷주름, 불상 뒷면 전체에 걸쳐 조각된 옷주름 모두 마치 물결이 이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옷주름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경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불상의 조성연대를 가늠케 해준다.

대좌(臺座)는 넓은 지대석(地臺石) 위에 팔각의 상대와 중대, 하대를 갖춘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팔각대좌(八角臺座)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넓은 지대석 위에는 8각의 하대석 받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3단으로 이루어진 하대석이 놓여있다. 제일 아래 단은 마멸이 심하여 분명하지는 않지만 안상(眼象) 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는 8엽의 복련(覆蓮)이 조각된 돌이 놓여있는데 꽃잎의 모퉁이에는 귀꽃이 큼직하게 솟아있다. 복련석 위로는 다시 팔각의 받침돌을 놓아 중대석을 받고 있다. 중대석 역시 팔각으로, 많이 마멸되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안상(眼象) 안에 불, 보살상 등이 얕게 조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2중의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 앙련(仰蓮)으로 장식되었는데,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간엽(間葉)도 묘사되었으며 꽃잎 내부에도 다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 매우 화려하다. 불상의 뒷면에는 광배 조각이 남아있으나 워낙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중간의 둥근 원형을 중심으로 연꽃과 초화문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광(頭光)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석조여래좌상으로 불신과 대좌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신체에 비하여 얼굴이 크며 양감이 줄어든 점, 형식화된 세부표현, 물결치는 듯한 옷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후기 9세기경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많은 부분이 후보되어 원형을 다소 잃고 있기는 하지만 불신과 대좌, 광배를 다 갖추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2)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봉수당진찬도는《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屛)》8폭 중의 한 폭으로《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1735-1762)의 묘소인 현륭원에 행행(行幸)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병풍으로 그 중 <봉수당 진찬도>는 현륭원 행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혜경궁 홍씨의 탄신 일주갑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진찬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진찬례는 화성행궁에 도착한지 사흘째인 윤2월 13일에 봉수당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연회에는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다 한다.

그림은 화면 상단에 봉수당을 포치하고, 중량문을 지나 하단의 좌익문을 연결하는 행각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 안쪽으로는 진찬광경이 그려져 있다. 봉수당 앞 계단에서 뜰에 이르기까지 임시로 덧마루를 설치하고, 대형 차일이 쳐진 백목장(白木帳)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 봉수당 온돌방에 마련되어 있는 혜경궁과 내외명부의 자리는 주렴으로 가려져 있고, 보계의 왼편 앞쪽에는 병풍을 둘러쳐져 있으며, 그 안쪽에는 호피보료방석이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자리임을 암시한다. 물론 위대한 인물을 그려 넣지 않는 조선시대 기록화방식을 따라 정조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호피방석이 2006년 보물 제1498호로 지정된 <조선후기 문인초상>의 방석과 유사하다는 점으로서, 정조 년간 상층계층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덧마루 위에는 융복(戎服)차림의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이 좌우로 나누어 쭉 앉아 있으며, 그 중앙에는 여령(女伶)들이 음악에 맞추어 일종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중앙문 밖에는 어가를 호위해 온 백관(百官)들이 융복(戎服)차림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찬탁(饌卓)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종이꽃)이 꽂혀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동국대학교 소장본 외

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리움삼성미술관, 고궁박물관,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형식은 같지만 세부묘사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국대학교본은 다른 진찬도에 비해 채색의 농도가 짙고, 묘사가 대체로 정밀하며 마치 위에서 본 듯 축약된 병풍 화면형태나 병풍 폭의 꺽이는 부분묘사, 인물들의 실감나는 동작 표현 등은 여타본 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와나 함 등에 명암이 절묘하게 구사되어 있는 점 등은 행사가 행해졌던 시기보다는 좀 더 후인 19세기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비록 단폭(單幅)으로만 전해오지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가필의 흔적이 없고 19세기 기록화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3) 희경루방회도(喜慶樓枋會圖)

<희경루방회도>는 1567년(명종 22)에 있었던 희경루에서의 방회장면을 그린 계회도(契會圖)이다. 이 방회도는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동기생들이 광주 인근의 누정(樓亭)인 희경루에서 20년만인 1567년에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하여, 그 감회를 간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은 위로부터 표제(標題), 계회장면, 좌목(座目), 그리고 발문(跋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부분은 붉은 색 선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적었고, 좌목에는 품계와 관직, 이름, 자, 본관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 있으며 이에 의하면 참석자는 1)通政大夫 行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2)資憲大夫兼全羅道觀察使 姜暹 明仲 本晉州, 3)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羅州, 4)禦侮將軍全羅道兵馬虞侯 劉克恭 敬叔 本忠州, 5)通訓大夫 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宜寧 등 5인이다.

발문에서는 1546년(명종1)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각자의 근무지를 따라 흩어진 후 만나지 못한지 20여년이 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의 그리움과 만남에 대한 감회를 적어, 관계에 함께 첫 발을 들여놓은 동료들 간의 친밀한 공감대가 엿보인다. 나아가 최응룡을 비롯한 다섯 사람의 앉는 위치마저도 서술하여 이 발문이 방회가 행해졌던 현장의 모습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방형의 화면에는 왼쪽에 희경루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희경루의 담장을 비롯한 주위경관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층으로 축조된 희경루 안에는 이 모임의 주인공들과 여러 명의 기녀들이 자리한 가운데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다. 서열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신분에 따라 관모(冠帽)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녀들은 당시의 유행대로 고발(高髮)을 하고 있다. 한편 희경루는 축대를 쌓은 대위에 1층은 기둥을 세우고, 2층에 누를 올린 것으로 그림 속 누정의 아래층에는 하인들이 쉬고 있으며, 누정의 왼쪽에는 피리를 부는 악공들이 무리지어 있다. 축대 아래쪽에는 나장과 같은 군졸들이 도열해 있다. 희경루의 동쪽 공간에는 민가가 인접해 있으며, 그 앞의 넓은 터에 활터가 있는데, 주변의 경관 역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배경을 이루는 산의 양감이나 질감묘사, 누정 왼쪽의 나무표현 등 먹의 흑백대비가 강조되어 있는 등 16세기 중·후반기에 유행했던 절파화풍(浙派畵風)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연회장면은 정면부감투시와 원근법이 사용되어 부각되고, 담장을 비롯한 다른 주변 경물들은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열하는 이중투시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아래 쪽 기둥들을 뒤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묘사하는 방식은 조선조 후기에야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따라서 이 그림이 방회가 있었던 1567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

라 좀 더 후인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6세기 중엽경의 화풍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으나 좌목, 발문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고, 가필(加筆)의 흔적이 없으며, 내용상 16세기의 방회도(榜會圖)는 <희경루방회도> 외에 1542년경의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를 제외하면 알려진 예가 극히 적으므로 사료적 가치도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4)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

2권 1첩(첩장본)이고 규격은 26.3×10cm이다. 판식은 상하은니단변(上下銀泥單邊), 상하(上下) 간(間) 17.1cm, 장 크기 26.3×89.4cm에 54행 16자가 배열되었고 9절(折)하여 첩장하였다(8장연결). 권수제는 감지은니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권하(紺紙銀泥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이고 권미제(卷尾題)는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이다.

이 경은 범망경(梵網經) 120권 61품 가운데 권제 10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 1품만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한역한 것으로 보살심지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권을 보살계경(菩薩戒經) 또는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한다.

표지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화와 은니당초문을 바탕으로 가운데에 '梵網菩薩戒經法合部'라는 제첨양식의 표제가 장방형 틀 안에 금니로 쓰여 있다. 경의 구성은 변상도에 이어 범망보살계서(梵網菩薩戒序),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계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戒心地戒品),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문은 은니로 쓰여 있다. 변상도는 "범망보살계경 변상(梵網菩薩戒 變相)"이라는 제명에 이어 네 면에 걸쳐 있는데 오른쪽에는 노사나불이 있고 아래에는 천불이 연꽃 위에 화현(化現)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용은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즉,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망어를 하지 말라' 등 10중대계(10重大戒)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는 범망경 권하의 게송 이하를 주석한 내용이다.

이 경은 『범망보살계경』을 필사한 고려사경으로 사성기(寫成記)는 없지만 표지화나 변상도의 양식, 필사형식으로 보아 14세기후반기의 (고려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재 서품(序品) 내용을 묘사한 변상도가 드물고 필사 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5)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류(地藏庵 木 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類)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은 현재 종로구 창신동 지장암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불상으로, 1924년 강재희가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모신 불상이다. 불상의 복장 안에서는 조성기, 후령통, 복장 전적(4종), 각종 다라니 등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조성기를 통해서 이 불상이 1622년(광해군 14년)에 자인 수양사(慈仁壽兩寺)의 본존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 내에서는 다량의 전적류와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17세기 본으로 추정되며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① 화엄경소(華嚴經疏) 권 3~4, 9~10, 13~14, 33~34, 37~38, 63~64, 67~68, 69~70, 71~72, 97~98, 99~100, 117~118

이 책의 판식(板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2×16.3cm, 무계(無界), 반

엽(半葉) 6행 15자, 주(註)는 쌍행(雙行), 간혼흑구(間混黑口), 내향혼엽화문어미(內向混葉花紋魚尾), 판심(板心)은 화엄(華嚴)이며 표지는 감색(紺色) 비단으로 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한국 불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경전 가운데 하나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실차난다(實叉難陀)가 한역한 주본화엄경(80권본)을 당나라 징관(澄觀)이 소(疏)를 붙인 것에 송(宋)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120권 가운데 24권 12책이다.

이 화엄경소는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교장수집(敎藏收集)과 구법(求法)을 위해 송나라에 들어갔을 때 각별한 교분을 맺은 정원(淨源)이 상인 서전(徐戩)을 통하여 경판을 보내 왔던 것으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교과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간기(刊記)에는 각수(刻手)를 간자(刊字)로 표기하고 있으며 각수는 조운(祖云), 성감(性甘), 법상(法尙), 성호(性湖), 영준(英俊), 학수(學修) 등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수(玄修), 상정(尙正) 등이 도대시주(都大施主)로 참여하고 있으며, 혜순(惠淳)의 화주로 1629년~1631년까지 3년여에 걸쳐 경기도 삭령(현 연천) 용복사(龍腹寺)에서 개판한 것을 인출한 것이다.

② 불명경(佛名經) 권2, 3

2권(권2,3) 2책이 가철(假綴)되었고 낱장이 다수이다. 규격은 38.2×27.4cm,

판식(板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상하 간(上下 間) 22.8 cm, 23행 14~15자, 권수제(卷尾題)는 “佛名經 第 二卷 第三張 恃”이다.

이 책은 고려 1242년(고종) 때 새긴 고려대장경으로 후위(後魏)의 보리유지(菩提流支)가 한역한 불명경이다. 이 경전은 부처의 명호를 수지 독송하면 모든 고난을 멀리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죄과를 소멸하며 삼매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체 12권 가운데 권 제2와 3은 가철되어 있고, 나머지 권은 낱장으로 남아 있다. 낱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1; 5~8, 11~18, 20~23, 28장 현존
권4 ; 1~6, 9~10장 현존
권5 ; 1~8, 19~28장 현존
권6 : 1~7,11~13, 31~37장 현존
권7 ; 30~33장 현존
권9 ; 1~12장 현존
권10 ; 1~9장 현존

제작년대는 권 2,3 말에 “壬寅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고종(1242년) 때 새긴 고려대장경판에서 조선후기(17세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③ 오천오백불명신주제장멸죄경(五千五百佛名神呪除障滅罪經)권 1,3,4,6

3권(1, 3, 6) 3책이 가철(假綴)되었고 권4는 1~11장만 남아있고 이후는 탈락되었다. 규격은 38.1×27.5cm, 판식(板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상하 간(上下間)22.5cm , 무계(無界), 전엽(全葉) 23행 14자 판미제(板尾題)는 “五千五百佛名經 卷第一 第二十五張 長”이다.

이 책은 고려 고종(1240) 때 새긴 고려대장경 판본으로 북인도의 도나굴(闍那崛)이 8권으로 한역한 것 가운데 일부이다. 이 경전의 이름은 5500명의 부처님 이름과 신비한 주문으로 장애와 죄악을 없애게 하는 경전이란 뜻이다. 내용은 부처님 이름을 외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남들이 잘되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 언제나 부처의 보호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제작년대는 권 1,3,6 말에 “庚子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고종 27년(1240)에 판각하고 조선후기(17세기)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 1,2,3,4,6

5권(1,2,3,4,6)이며 복본(10묶음)이 있고 모두 낱장이다.

규격은 20.2×13.8cm이고 판식(板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2 ×13.8cm, 무계(無界), 반엽(半葉) 10행 20자이다. 판심제(版心題)는 "法"이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이다.

이 책은 계환(戒環)의 묘법연화경인데 급남(及南)의 요해서(要解序)가 붙어있고 불복장용으로 인출하였던 듯 모두 낱장 상태로 있다. 성종의 후궁인 숙용 정씨(淑容 鄭氏)와 소의 권씨(昭儀 權氏)가 시주자(施主者)로 참여하여 조선 성종 연간에 간행한 판에서 17세기 경에 찍어낸 판본이다.

⑤ 다라니(陀羅尼)

다라니는 약 741장으로 능엄주(楞嚴呪), 조상경진언(造像經眞言)의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의 소다라니를 비롯하여 오륜종자, 진심종자, 문수보살 대위덕심주(文殊菩薩 大威德心呪) 등이 섞여 있고 중복된 것들이 많지만 조선 후기복장다나니의 면모를 잘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6) 지장암 신중도(地藏庵 神衆圖)

이 불화는 1889년에 조성되어 경기도 광주 영장산(靈壯山,현 성남시 분당구) 법륜사(法輪寺, 현 폐사)에 봉안되었던 신중도로서, 지장암의 중창주인 강재희(姜在喜)가 1924년에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감로도(1889년)와 함께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금어(金魚) 완송 종현(玩松 宗顯), 완명 응기(玩明 應基), 편수 (片手) 비구(比丘) 석조(奭照)가 함께 그렸다.

화면은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화면에 범천(梵天)과 제석천(帝釋天), 위태천(韋駄天)을 중심으로 한 많은 신중들을 표현하였다. 상단에는 범천과 제석천, 일월천자, 주악천인(奏樂天人)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범천과 제석천은 보살의(菩薩衣)에 보관을 쓰고 두 손을 모아 활짝 핀 백련과 모란을 들고 정면을 향해 서있는데, 신광 전체를 백색으로 칠하여 밝은 느낌을 준다. 범천과 제석천 바로 아래에는 붉은 색의 해와 흰색의 달이 그려진 관을 쓴 일궁천자(日宮天子)와 월궁천자(月宮天子)가 중앙을 향해 서있으며, 이들 주위로 당(幢)·번(幡) 등의 장엄구를 든 동자와 천인 및 악기를 연주하는 동자들이 배치되었다.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룡팔부(天龍八部)가 표현되었다. 중앙에 큼직하게 표현된 위태천은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튼 채 두 손을 가운데로 모아 금색의 삼지창을 세로로 들고 있는데, 화려한 깃털 장식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있는 모습은 천룡팔부의 수장으로서의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이목구비는 세필의 선묘(線描)로 가늘게 그려져 있다. 위태천의 좌우로는 부채를 든 산신(山神)과 건(巾)을 쓴 조왕신(竈王神)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무기를 든 천룡팔부가 시립하였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 청색, 흰색, 황색, 금색 등이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적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화면에 권속들이 꽉 차서 다소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범천, 제석천의 신광과 권속의 얼굴을 백색으로 칠하여 한결 밝은 느낌을 준다. 무기를 비롯하여 갑옷 등에는 금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청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신중도를 그린 화승 중 석조(奭照)는 같은 해 감로도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화기]
光緒十五年九月日新
畵成神衆幀一軸奉

安于京畿左道廣
州細村面靈壯山法輪寺
緣化所
證明比丘御南完弼
誦呪比丘沿應健行
金魚 玩松宗顯
玩明應基
片手比丘 奭照
持殿 龍化德信
鐘頭比丘 宗敏
供司比丘 亘壽
別座比丘 元照
都監比丘 泰還
化主比丘昊惺性安
本寺秩
老德 昊性性安
法喜
住丈 元照
施主秩
乾命乙未生李奎承
坤命壬寅生黃氏
長子庚午生晃鎬
婦戊辰生柳氏
童女辛巳生李氏
婿郎乙丑生金鎭弼
女息丙寅生李氏

이 불화는 1889년에 금어(金魚) 완송 종현(玩松 宗顯), 완명 응기(玩明 應基), 편수(片手) 비구(比丘) 석조(奭照)가 조성한 신중도로서 경선당 응석이 출초한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1867년), 성북구 미타사 대웅전 신중도(1873년), 경국사 극락보전 신중도(1887) 등을 기본으로 하여 조성한 것이다. 천부중과 천룡팔부를 한 폭에 묘사한 형식이라든가, 산신과 조왕신이 위태천의 협시로 등장하는 점, 주악천녀의 모습 등은 전형적인 19세기 신중탱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가로를 길게 하여 인물을 짜임새 있게 배치한 점은 이 그림을 그린 화승이 전통적인 초본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변화있는 도상을 만들어 내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세기 서울지역 신중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한다.

7) 지장암 감로도(地藏庵 甘露圖)

이 감로도는 1889년에 조성되어 경기도 광주 영장산(靈壯山,현 성남시 분당구) 법륜사(法輪寺, 현 폐사)에 봉안되었던 감로도로서, 조선말기 서울지역 사찰의 중요 시주자였던 강재희(姜在喜)가 1924년에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법운장□(法雲 壯□)와 허곡긍순(虛谷亘順), 석조(奭照)가 함께 그렸다. 그림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하단 부분이 많이 퇴색되는 등 손상이 있다. 현재는 지장암 대웅전 향우측벽에 봉안되어 있는데, 가로 231cm, 세로 183.5cm의 규모로 견본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가로로 긴 화면의 상단에는 칠여래(七如來)가 합장을 한 채 나란히 서 있으며, 좌측에는 아미타 삼존(阿彌陀三尊)일행이 구름을 타고 내영(來迎)하는 모습과 왕후장상(王侯將相), 선왕선후(先王先后), 북채를 든 뇌신(雷神), 우측에는 석장을 든 지장보살과 번(幡)을 든 인로왕보살 및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이 구름을 타고 내영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칠여래는 커다란 백색의 신광을 배경으로 각각 합장한 채 정면을 향해 나란히 서있으며, 그 아래로는 성대하게 차려진 제단이 놓여있다. 제단은 좌우에 붉은색의 높은 기둥을 세운 후 南無百億化身佛(석가모니), 南無淸淨法身佛(비로자나불), 南無圓滿報身佛(노사나불)의 이름이 적힌 삼신불번(三身佛幡)을 늘어뜨리고 갖가지 꽃과 공양물을 가득 배설하였는데, 법신 비로자나불번의 좌우에는 '봉위주상전하성수만세국태민안법륜전(奉爲主上殿下聖壽萬歲國泰民安法輪轉)'(향

우), '보고십방제찰해소유일체군생류(普告十方諸刹海所有一切群生類)'(향좌)'라 적혀있다. 제단으로 이르는 돌계단 아래 좌우의 커다란 화병 안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모란이 가득 꽂혀있어 화려하게 치장된 당시 제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제단의 우측에는 천막 안에서 스님들이 나란히 모여 앉아 독경하는 모습과 작법승(作法僧)들이 큰북과 바라 등을 두드리며 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승무(僧舞)를 추는 모습, 커다란 공양물을 머리에 이거나 들고서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한 쌍의 아귀(餓鬼)가 서로 마주보고 꿇어앉아 있는데, 송곳니를 들어낸 큰 입과 위로 뻗친 머리카락, 커다란 눈, 거친 턱수염 등 아귀의 특징을 잘 묘사하였다. 한편 아귀의 좌우로는 산악과 수목으로 분리된 화면 속에 세속의 다양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한복 입은 남녀들이 춤을 추거나 싸우는 장면,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면,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 광대가 거꾸로 서는 묘기를 부리고 초랭이가 부채를 들고 춤추는 장면, 죽방울 놀이 하는 장면, 서당모습, 밭가는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음식을 먹거나 술을 받는 모습, 물건을 파는 모습 등은 당시 장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여기에 표현된 풍속장면들은 주로 장례나 영가천도 등의 행사와 관련된 장면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수륙화로서의 감로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면 우측으로는 뇌신을 표현한 화염 아래로 우산을 쓴 인물과 뱀에게 쫓기는 장면 등 화엄경 관세음보살보문품(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구제난(救濟難) 장면등과 더불어 농사짓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병자를 진료하는 모습, 소고 등을 갖고 무리지어 노는 모습, 일하러 가거나 장터에 가는 모습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과 죄인들을 벌하는 모습, 전쟁 장면 등을 표현하였다.

채색은 전체적으로 적색과 녹색 위주의 채색으로 인한 보색 효과와 더불어 양청색이 주는 강조와 다양한 인물들의 표현과 생동감 있는 자세 등의 연출로 인해 화면 전체가 생기 있는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다. 이외에도 황색, 백색, 청색 등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화기]
光緖十五年己丑九日
新畵成甘露幀奉
于靈壯山法輪寺

緣化所
證明比丘御南□□
海翁法□
誦呪比丘沿應健□
金魚比丘法雲壯□
虛谷亘順
片手比丘 奭照
持殿比丘 龍化德信
鐘頭比丘 宗敏
別座比丘 元照
都監比丘 太還
化主比丘昊惺性安

本寺秩
老德 法喜

施主秩
乾命乙未生李奎承
坤命壬寅生黃氏□□□□
長子庚午生晃鎬
婦戊辰生柳氏
童女辛巳生李氏
婿郎乙丑生金鎭弼
女息丙寅生李氏

化主
淸信女丙戌生金氏大□□

이 감로도는 19세기 중엽 이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행한 감로왕도의 전형적인 도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성 당시 불교의 재의식 장면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생활상 등 수륙제 의식(水陸齋 儀式)과 생활상을 충실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감로도는 현재 수락산 감로도(1868년)를 비롯하여 경국사 감로도(1887년), 불암사 감로도(1890년), 봉은사 감로도(1892), 청룡사 감로도(1898년), 보광사 감로도(1898년) 등에 남아있는데, 이 작품은 특히 다양한 인물들의 표현과 생동감 있는 자세 등의 연출로 인해 화면 전체가 생기 있는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 그림을 그린 화승 중 허곡 긍순(虛谷 亘順)은 1887년에 이와 동일한 도상의 서울 미타사 감로도 제작에 참여한 바 있으며, 3년 후에는 봉은사 대웅전 감로도(1892년)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 불화는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지역 감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3. 지정 일자 : 2008년 7월 10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6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통감 사정전훈의 권 48-52>, <자치통감강목 권 54>를 서울시 유형문화재에서 지정 해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해제 개요

해제종별	해제 문화재명	지정 해제사항		
		수량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4호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 권 48-52 『資治通鑑 思政殿訓義』 卷 48-52	5권 1책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유앤미 아파트 101동 605	정철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5호	『자치통감강목』 권 54 『資治通鑑綱目』 卷 54	1책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유앤미 아파트 101동 605	정철교

2. 해제사유 : 2008. 1. 21字로 소유자 정철교가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화성박물관에 문화재를 매도함으로써 소유권 및 보관장소 변경을 신고하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함
3. 해제일자 : 2008. 7. 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6호(2007.9.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876호(2008.5.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47-16 ~ 198-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지하차도 706m, 연결도로 2,2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3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3708-242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지		지 분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	개봉	307-60	대	1.3	이경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 3				
					서재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터시핀가 10231	7분의 2				
					서영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 2				
2	개봉	307-3	대	79.3	최영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37 우성아파트 301-501	전체	김용득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275	가처분	
3	개봉	306-57	대	14.3	강경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02-13 우주타운 1-102	전체				
4	개봉	203-21	대	25	김수갑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53-27	80분의 62				
					엄기덕	부천시 소사구 산40-1	80분의 18				
5	개봉	204-13	도	51	오승명	일본국 동대판시 족대북 2 정목 82	전체				
6	개봉	204-20	도	144	오승명	일본국 동대판시 족대북 2 정목 82	전체				
7	개봉	204-12	도	81	오승명	일본국 동대판시 족대북 2 정목 82	전체				
8	개봉	204-5	잡종지	33	오승명	일본국 동대판시 족대북 2 정목 82	전체				
9	개봉	212-12	답	2	장창군	전주시 다가동 1가 13	전체				
10	개봉	202-28	도	2	오중열	구로구 개봉동 202-9	전체				
11	개봉	202-3	답	1	㈜우성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7	전체				

지 장 물 조 서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구 조	소 유 자		비고
	구	동					주 소	성 명	
1	구로	개봉	307-44	대	4.9	대문,담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07-44	오정섭	
2	구로	개봉	307-45	대	2.3	담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07-45	오동호	
3	구로	개봉	407-12	대	67.3	담장	광명시 광명동 333-17	오영호	
4	구로	개봉	306-54	대	1식	담장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파트 105동 404호	윤용식	

영 업 권 조 서

순번	소 재 지		지번	상호	소 유 자		비 고
	구	동			주 소	성 명	
1	구로	개봉	407-12	대림자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706	배재문	
2	구로	개봉	306-54	일신자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파트 105동 404호	윤용식	
3	구로	개봉	202-19	가로판매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95-32	윤기세	
4	구로	개봉	306-54	구두수선대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63-4	이수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 - 396호(2001.12.5)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일대 추계예술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추계예술대학교내 본관건물(5층)을 일부구간 수직증축(1개층)하여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시설의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추계예술대학교)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일대	계	45,720.10	-	45,720.10	
			건축부지	10,091.61	증) 33.39	10,125.00	
			녹지부지	12,646.70	감) 9,341.70	3,305.00	
			조경부지	-	증)10,207.00	10,207.00	
			도로부지	11,192.49	감) 894.39	10,298.10	
			운동장부지	11,789.30	감) 4.30	11,785.00	

나. 건축계획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의 범위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5%이하	23%이하	85%이하	78%이하	5층이하	6층이하

다. 세부 건축규모 변경결정

구분	건 물 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물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축	2동 본관	1,434.26	1,434.26	5,634.86	6,475.31	지상5층	지상6층	일부구간 5층→6층으로 1개층 수직증축
신 축	13동 선수대기실	-	33.75	-	33.75	-	지상1층	건축신고에 의한 준공 후 단순변경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2) 및 서대문구 도시개발과(전화 330-164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9호

하천구역의 결정(폐지)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02-2115-7874) 및 성북구 치수방재과(☎02-920-3415)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구간			면적(㎡)	결정(폐지)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정 릉 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21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92-46번지	0.1	287	토지 효율적 이용 (대지 및 도로로 이용)

열람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1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토 지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성북구 종암동	89-21	천	221	221	서울시					
2	〃	92-8	제	62	62	서울시					
3	〃	92-45	제	1	1	서울시					
4	〃	92-46	제	3	3	서울시					
계		4필지		287	287						
							- 이하여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08호(2005. 7.14)로 결정 고시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일대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실 효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일대	436,240	실효일자 2008. 7.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실효 사유
실 효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일대	436,240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 기간 경과

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538) 및 성동구 도시개발과(☎ 2286-5560)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1호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0호(2008. 7.10)로 실효고시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일대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재)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580일대	436,240	최초 결정 : 2005. 7. 14 (서고2005-208호) 2008. 7.14 실효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재)결정 사유
신 설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일대	436,240	· 뚝섬상업용지와 서울숲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필요 · 뚝섬상업용지와 조화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있는 개발 유도

2. 관련 도면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538) 및 성동구 도시개발과(☎ 2286-55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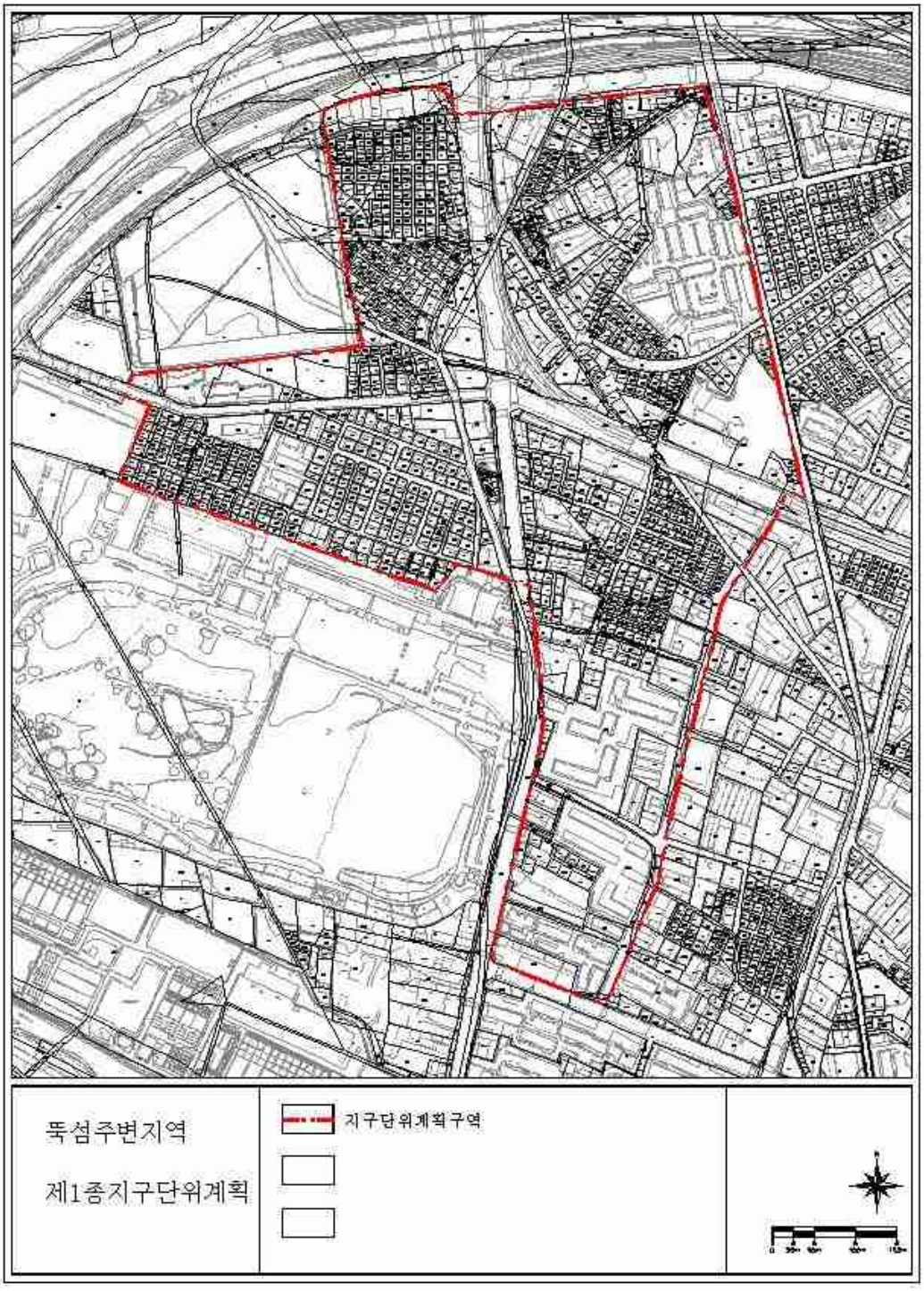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2호

2008년도 하반기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 결정 대상

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단위 : 천원)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명		2008 당초 시가표준액	2008 조정시가표준액
서울시 서초구 스포타임	일반정회원	19,000	12,500
	일반가족회원	13,500	8,000
	일반법인회원	51,300	49,950
	특별정회원	42,500	24,500
	특별가족회원	37,500	20,500
	특별법인회원	127,500	83,7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3호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내용

가.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구역번호:재개발1구역)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 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뉴타운	재개발1	전농4동	204	9.3	190%	12층이하	50%	1	주택재개발 사 업	전면	

전농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전농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	93,69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93,697	10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1,437	22.88	
	도 로	13,764	14.69	신설 및 확폭
	공원(주차장)	6,268	6.69	신 설(공원1과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청사	1,405	1.50	신 설
택 지	소 계	72,260	77.12	
	택 지1	67,829	72.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828	0.88	종교시설1
	택 지3	803	0.86	종교시설2
	택 지4	2,800	2.99	종교시설3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446	18	집산도로	284	전농동 357-1	전농동 260-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47	15	집산도로	303	전농동 206-114	전농동 141-21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48	18	집산도로	100	전농동 206-71	전농동 209-44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44	15	집산 도로	135	전농동 295-50	전농동 60-258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444	18	집산 도로	135	전농동 295-50	전농동 60-258	일반 도로			구역내 3~8m 확폭 전농지구중심15m확폭
기정	중로	2	445	18	집산 도로	60	전농동 325-129	전농동 355-1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445	18	집산 도로	113	전농동 325-129	전농동 357-30	일반 도로			구역내 L=53m
기정	대로	3	11	25	보조 간선	2,400	답십리동 493-14	청량리동 31	일반 도로			
변경	대로	3	11	25 (28)	보조 간선	2,400 (398)	답십리동 493-14	청량리동 31	일반 도로			전농로: B=25m 구역내 3m확폭
폐지	소로	3	7	6	-	205	전농동 275-51	전농동 357-5	일반 도로			
	소로	2	7	8	-	400	전농동 295-47	전농동 138	일반 도로			
	소로	3	6	6	-	490	전농동 273	답십리동 420-8	일반 도로			
	소로	2	8	8	-	46	전농동 206-84	전농동 206-29	일반 도로			
	소로	2	8	8	-	72	전농동 204-142	전농동 206-135	일반 도로			
	소로	2	8	8	-	121	전농동 204-26	전농동 269-4	일반 도로			
	소로	3	-	6	-	214	전농동 270-31	전농동 295-87	일반 도로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공원1	어린이 공원	동대문구 전농동 357-21번지 일대	-	증)4,166	4,166		주차장과 중복
신 설		공원2	소공원	동대문구 전농동 271-19번지 일대	-	증)1,702	1,702		
신 설		공원3	소공원	동대문구 전농동 141-175번지 일대	-	증)400	400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농4동 사무소	공공청사	동대문구 전농동 206-35번지 일대	-	증)1,405	1,405		

라)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공영주차장	동대문구 전농동 357-21번지 일대	-	증)4,166	4,166		공원1 과중복
폐 지		공영주차장	동대문구 전농동 273-1번지 일대	977	감)977	-		

마)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 지		공공공지(1)	동대문구 전농동 199-56번지 일대	2,321	감)2,321	-		
폐 지		공공공지(2)	동대문구 전농동 272-1번지 일대	801	감)801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전농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93,697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	533	-	-	533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건축시설 계획				
	명칭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주된 용도
신설	택지1	67,829	전농동 204 일대	50% 이하	230% 이하	70m 이하 (평균16층이하)	260,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828	전농동 138-10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종교시설
	택지3	803	전농동 206-53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종교시설
	택지4	2,800	전농동 294-3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종교시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515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1,221세대(80.59%) 85㎡초과 : 294세대(19.41%) - 임대주택 262세대(전체세대수의 17.29%) 40㎡이하 : 106세대(임대주택의 40.45%) 40~50㎡이하 : 117세대(임대주택의 44.66%) 50~60㎡이하 : 39세대(임대주택의 14.89%)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전농로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3m지정 ·공원주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10m지정 ·기타도로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 4년이내	감) 66세대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사항

○ 변경 결정 취지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밀도계획 및 층수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의 층수 완화(12층 이하 → 평균층수 16층 이하)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3,697	-	93,697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9,769	감) 59,76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3,928	증) 59,769	93,697	100%	

※ 평균층수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완화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미관지구(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지구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	일반	전농로변	28,800 (4,776)	2,400 (398)	12		

※ ( ) 사업지구

○ 방화지구

구 분	도면 번호	지구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방화		동대문구 전농동 199-30번지일대	6,007		

6)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

- 건축계획은 우리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건축심의를 득할 것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7),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7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4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 변경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0.20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19호)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가. 중점평가항목 (10)
      1) 자연환경 : 지형·지질, 동·식물
      2)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온실가스 포함), 수질(지하수, 하수도, 침수안전도, 우수유출율 포함), 토양,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함),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나. 현황조사항목 (3)
      1) 자연환경 : 기상(미기상 포함)
      2) 사회·경제환경 : 인구, 교통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2. 평가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 고시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 적정 이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정)
      ※ 사업자는 고시항목의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중점평가항목-10】

가. 지형·지질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지형의 물리적 변화 • 토사 발생량 및 구체적인 토사처리계획의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평가내용	① 지형의 물리적 변화 •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시행전·후 표고 분석(시행전 측량도 제시) •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횡단면도 작성 -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대지 지하단면, 지하철시설 및 지하도단면, 이격거리, 지반고 등 - 시추조사 및 실내실험을 통한 지층별 물리적 특성 분석 •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지하개발 면적, 깊이 제시 - 평면도상에 사업지구 및 지하굴착 경계 표시 - 사업지구 주변 건축물 지하개발 규모 제시 - 최대 굴착 깊이 40m 제한 ② 토사 발생량 및 구체적인 토사처리계획 제시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절·성토 발생량 산정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 종·횡단면도를 근거로 정확한 토공량 산정 - 토사 반출 및 반입량 분석 - 사업지구내 성토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 계획 수립 • 토사처리계획 제시 - 잔토(사토) 처리계획 제시 (사토장 위치, 이격거리, 운반경로 등) - 잔토(사토) 운반에 따른 2차 환경문제 발생 여부 및 대책 수립 -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이송시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 통과 자제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 등 으로 지하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수질 조사에 따른 오염여부 검토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 고려한 함양율 적용하여 분석 -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 등 제시(흙막이공법 시행전·후 지하수위 및 유출량 비교)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계획 수립(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 방법, 지점 등) - 바닥면 유입 지하수량에 따른 공법검토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 운영시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하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 공사 완료후 지하수모니터링 관정의 활용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④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인접건물 및 지하시설에 대한 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 제시 - 계측계획 수립(설치위치, 개수 도면 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 한강변 등 충적층의 지하 굴착시 토사유출 및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주변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심층 검토
평가기준	• 높이 5m 이상의 단일 옹벽 생성 지양 • 기존 지형 활용에 따른 토사발생량 최소화 • 토사의 무반출 및 무반입, 발생토사는 사업지구내에서 최대한 재활용 • 지하수위 유지 - 지하수 배제 공법 지양 -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및 지하 재충진 - 건축물 벽체와 바닥의 완전한 차수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나. 동·식물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 옥외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평가내용	①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 현황조사 -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 제시 - 비오톱유형을 확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 확인 - 현황조사(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범위 제시 - 영향범위내 식생조사현황도 제시 - 현황조사 이동경로, 조사기간 제시 - 현황조사결과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 • 현재의 동·식물 서식현황과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 사업시행전·후 동·식물상 변화 비교표 제시 - 사업시행으로 식재된 식물종으로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동물종 예측 - 기존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분석 - 녹지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 현재의 동·식물상 및 서식환경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서식환경 및 동·식물상의 개선 정도 파악 ② 옥외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옥외공간 설계대안에 동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공간 조성 계획·설계안 마련 - 녹지면적 변화, 식재계획도 등 제시 •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조성 등 비오톱 조성(옥상녹화 다층구조식재) - 생태연못 및 생태하천 조성 등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에 대한 구체적 제시(도면 등) - 주변 공원, 하천, 산림 등과의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 생태적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사업부지와 개방공간 사이에 위치하는 기존건물 주변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계가능성 검토 - 지표종을 설정해서 비오톱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 건물주변은 생태적 기능의 보완을 위해 녹화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기존 수림 보존대책 수립 - 보존계획표 제시(이식, 존치 등) • 사업부지내 및 주변에 비오톱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사업부지의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 비오톱 1,2등급 지역 제시 - 훼손여부 및 관련 지침 검토 - 인접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기준	• 생물다양성 증진 • 사업지구내·외 녹지의 연결 • 비오톱유형 1,2등급지역이 인접할 경우 인접 비오톱유형 1,2등급지역과의 연계 • 사업부지내 비오톱유형 1, 2 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대책 수립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주변지역에 공원, 하천, 산림 등 일정규모의 개방공간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일정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개방공간에 대한 기존자료 및 일부 현지조사자료(기존자료가 없을 경우) 등을 분석하여 연계성 검토에 활용

다. 토지이용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 대지안의 녹지면적 변화 • 지하공간 개발
평가내용	①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분석 - 사업시행전·후 토지이용계획 비교 - 현황사진 첨부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지역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도면 제시 - 용적률 등 인센티브 사항 제시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검토 - 지역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 • 공개공지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②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 사업전·후의 토지피복유형별 면적의 변화를 포함한 생태면적률 변화분석 - 구적도 및 토지피복유형별 단면 제시 -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 옥상녹화, 벽면녹화 산정 제외(제외 전·후 구분 제시) - 기부채납분 제외 ③ 대지안의 녹지면적 변화 • 자연지반녹지율 증대방안 검토 - 평면도상 굴착경계, 면적 제시 • 사업전·후의 녹지면적 변화 비교 - 지상부녹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면적 제시 - 대지면적 대비 녹지비율 제시 (지상부녹지에 한함) • 주변지역과 광역녹지축(징검돌 역할) 연계 방안 검토 - 주변지역과의 광역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사업지구내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모식적인 녹지축의 연계도 제시를 지양하고 녹지축 뿐만아니라 녹지의 양적 질적 검토 제시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④ 지하공간 개발 • 건축면적 대비 지하개발면적의 비교 및 자연지반 최대 확보 방안 검토 - 평면도상 굴착경계, 지하개발면적 제시 -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를 위한 계획과정 제시
평가기준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개공지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 : 30% 이상 -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권장기준 생태면적률의 20% 이상 • 대상지 내외의 녹지축 연결 • 지하공간개발 최소화 - 심도 40m 이내 • 자연지반 최대 확보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단, 생태면적률 분석은 사업지구내로 한정함)

라. 대기질(온실가스 포함)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시 공사단계별 장비투입 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사업시행후 사업지구 내·외부지역의 대기환경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사용 절감 대책 • 실내공기질 개선
평가내용	①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시 공사단계별 장비투입 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재의 대기질 현황 파악 - 현황 측정결과의 평가시 장·단기기준 모두 적용 - 기존 측정망 자료와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역 전반의 평균적인 대기오염상태 제시 - 배경농도 선정 근거 제시 •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장비의 가동, 토사 상·하적 등에 따른 대기질 예측 실시 - 영향예측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현황(풍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공사진행계획 제시 - 기존 건축물 철거시 비산먼지, 석면 영향 예측 - 유사공사장의 장비투입 현황을 조사하여 투입대수 산정(소음·진동항목 연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NO2/NOx 비율 적용 근거 등) - ISCST3 적용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 비교 평가 - 사업지구 주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복합 영향 검토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 대규모 사토 발생에 따른 사토장 개발시 별도 예측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철거시 포함) - 저감대책 마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량 검토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 저감효율에 대한 근거 제시 - 외벽 도장시 저감대책 마련 ② 사업시행후 사업지구 내·외부지역의 대기환경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검토 • 운영시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소비에 따른 영향예측 실시 - 영향예측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변화(풍향 등)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 비교 평가 - 사업지구 주변 예정 사업에 대한 고려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③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사용 절감 대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검토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검토 •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영방향 제시 •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의 예측 평가 •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제시 - 적용규모(총건축공사비 대비 % 또는 총에너지소비 대비 %) - 적용수량 및 위치 등 계획 - 유지관리계획 •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설계방안) 작성 및 이의 실제 이행 가능성 제시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검토 • 에너지성능지표 상향 검토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검토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 적극 사용방안 검토 • 옥상, 벽면을 발열이 적은 물질로 사용하고, 옥상녹화 등의 대책 마련 ④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검토 -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환기시설 설계 등 계획, 실제 이행 가능성 검토 - 학교사업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오염 관리방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 - 실내사용 제한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제시(최근자료 확인) - 공동주택의 내부환기 검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검토
평가기준	•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총건축공사비 대비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소비 대비 1% 이상 - 공공 건축물의 경우 총건축공사비 대비 5% 이상 •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또는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 모두 충족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마. 수질(지하수, 하수도, 침수안전도, 우수유출율 포함)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공사시 하천 및 하수관의 토사유출 방지대책 •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의 유출 및 사용에 의한 지하수 영향권 내의 지하수이용 영향 예측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의 처리계획 •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외지역의 우·오수 분류처리 여부 - 우수유출량 산정 및 우수유출저감계획 · 개발전(나지상태)·후의 우수유출 변화량 · 계획확률강우량에 대한 공공하수관거 통수능검토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방안 검토 - 사업후의 오수처리 및 절수대책 · 운영시 오수발생량 · 기존 하수관거 용량검토 •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상수도관망의 용량검토 • 침수안전도 검토 - 서울시 및 해당지역 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한 침수발생 가능성 검토
평가내용	①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분석 •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침사지 용량은 공사시 재현기간 10년, 30년의 우수유출량 및 집중호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유지관리계획 수립 ②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지형지질과 중복 배제, 결과를 중심으로)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사용량, 지하수 오염, 지하수유출에 따라 지하수이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감소대책 시행전후 유출량 산정 비교) - 유출지하수 지하환원 방안 - 유출지하수 재이용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조사시 지하수유동방향과 연관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실시 - 지하수유동방향 및 수질검사 관정을 도면으로 제시 • 공사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 사업부지내 지하시설물(유류탱크, 하수관거, 정화조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계획 수립 ③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 공사시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 정화조폐액의 악취가 공공하수관거 빗물받이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거로의 펌프배출시 악취발생 저감시설 확보 ④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2),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분류식계획 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가능여부 검토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 나지상태와 사업후의 불투수면적에 대해 계획강우확률(또는 강우확률 30년빈도)에 의하여 인근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량 및 공공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초과우수량을 산정하고, 유출되는 노면수량과 하수관거통수능(설계빈도 10년)을 초과하는 유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수유출저감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검토 - 유형별 유출계수를 적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고 적용한 유출계수의 근거 제시 (옥상녹화, 인공지반의 유출계수는 0.7이상 적용)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및 설치위치, 면적, 집수된 우수의 활용계획, 청천시, 우천시의 운영 및 관리계획 제시 - 옥상층에 녹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규모산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선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적정성 및 집수구역 관리대책 제시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 강우시 빗물의 지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빗물이 지면으로 환원되도록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및 투수성이 큰 바닥포장재 등의 침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검토 - 침투율이 큰 침투시설은 자연지반에 설치 - 구조, 설치위치, 토층구조 제시 - 인공지반에 설치시 자연지반으로 유입되도록 계획 - 침투시설 폐쇄방지를 위해 유입구에 협잡물 및 토사제거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의거한 빗물관리계획 수립 • 운영시 발생오수량에 대한 오수처리대책 수립 - 계획오수량의 산정은 오수전환율 100%, 지하수유입은 없는 것으로 적용 - 하수처리장 처리계획시 실제 처리현황과 인근 처리구역의 개발계획의 오수발생량을 고려하여 유입가능 여부 검토 • 운영시의 집중강우시 계획하수량(오수량+우수량)에 대한 공공하수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로 청천시 유입되는 기존의 모든 오·우수량을 고려 ⑤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계획 수립 - 계획급수량 산정시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 상수사용량의 상수도관망 해석에 의한 공급가능성 및 주변지역 상수사용에 대한 영향 검토 - 용수절감계획 수립 ⑥ 침수안전도 검토 • 침수안전도 검토 및 예방대책 검토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한 침수발생가능성 분석 및 침수안전도 확보대책 -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하여 사업시행 후의 해당 사업지역과 해당사업지역의 우수유출에 의한 인근지역의 침수피해가능성 평가 및 침수안전도 확보대책의 검토
평가기준	• 공사시 하천 및 하수관거의 토사유출 방지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 최소화 및 지하환원 대책 수립 • 우수유출율 유지 - 사업후 대상지역의 우수유출율은 나지상태와 비교 - 증가된 유출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처리대책수립 • 침수안전도 확보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기준	- 강우확률 30년 빈도에 대해 침수안전도 확보 - 공공하수관거 설계빈도 10년을 초과하는 우수량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우수유출 저감시설로 처리하는 대책 수립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바. 토양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토양오염개연성의 현황조사, 시험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 표토활용가능성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이력을 조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현존하는 철거예정 지장물중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17종)을 보관·취급하였는지의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수행한 과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기록 및 필요시 정화기록 제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과거 토양오염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실측조사 실시 -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 사업지구내 총 5개 지점 이상에 대한 토양 측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17개 항목 · 토양시료 채취지점 선정근거 제시(화단채취 지양) · 채취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및 도면상 채취지점 표시(채취지점의 현재 용도 제시) · 조사지점의 선정 및 시료 채취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 · 수행한 전문기관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제시 ·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철도,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된 지역에서는 사업지역 전체에 대한 심토 굴착을 포함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② 표토 재활용가능성 평가 • 표토의 이화학적 특징 분석 및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 사업지구내 훼손되는 녹지 등에 대하여 표토 이화학적 특징을 분석 - 표토재활용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검토 - 표토 재활용을 위한 지구내 가적치장 확보 방안 제시 ③ 토양오염 저감대책 • 오염토양의 처리대책 수립 제시 - 유사사례 조사 및 토양오염 원인 규명 - 정밀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 • 공사시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처리방안 제시 • 현황조사시 확인되지 않았던 토양오염 발견시 처리대책 수립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기준	• 현황조사의 적정성 • 오염토양에 대한 적법 처리계획 수립 • 표토 재활용계획 수립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사.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함)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공사시 폐기물 처리 -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 폐석면 등 유해폐기물의 처리대책 -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대책, 처리대책 수립 • 공사시 및 운영시에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과 종류 평가 • 재생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평가내용	① 공사시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신축 및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양 예측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내 생활계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선철거하는 계획 검토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제시 • 기존 건축물 철거시 정화조에 대한 처리계획 제시 • 폐석면 등 유해폐기물 발생가능성 검토 및 처리대책 제시 • 공사시 발생분뇨 처리대책 제시 • 각종 폐기물의 관련법 또는 지침상의 책임영역에 관한 평가 • 해당지역 및 서울시의 처리경로 및 처리시설의 확보실태를 파악 • 타 현장의 수범사례 조사 • 적법한 지정폐기물 처리절차 수립 ②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순환골재의용도) 및 제6조(의무사용량)에 의하여 10%이상 순환골재 사용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종류 및 활용처 제시)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상의 기준 - 도로의 보조기층용 골재는 10% 이상의 순환골재 사용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해당지역, 서울시 또는 수도권 • 건축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해당지역 또는 처리권역

아. 소음·진동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소음원, 정온시설 현황 조사 • 공사시 건설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수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 소음에 민감한 학교·주거시설,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기타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사업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② 공사시 영향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공종에 대하여 공종 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 - 공종별 공사물량(산출근거), 해당 공종의 공사소요일수, 투입장비 및 소요대수(산출근거), 해당 장비의 동력, 장비별 소음도(인용자료),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산출식) 등 고려 •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 표고 등을 고려하여 소음예측 실시 - 공사지점부터 수음점까지의 수평 등소음도 곡선 및 수음점에서의 수직 등소음도 곡선(층별 소음도 별도 표기)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의한 회절, 반사영향 적용 ③ 운영시 영향예측 • 운영시 사업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조사 및 평가 - 주변 소음발생원(교통 및 항공소음 등)에 의한 사업지 층별 소음도 예측 - 소음도 예측과정 및 예측조건, 예측공식, 사용 프로그램명 등 근거자료제시 • 도로 교통소음 예측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실제 주행속도에 준한 주행속도 적용 • 등소음도 곡선, 수직단면도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의한 회절, 반사영향 적용 ④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발파 공법별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조한 저감대책 마련 - 정온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무진동 발파 공법 등 적용가능 공법 제시 - 정온시설의 특성에 따라 진동속도 기준 검토 ⑤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가설방음판넬 제원 산정시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 지형조건이나 건물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소음도 산출 - 방음벽의 차음성능(음향투과손실) 고려 •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시설 검토 • 저감방안 수립후에도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방안 마련 ⑥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 운영시 저감대책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 운영시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의 층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방법 및 성능 등 제반사항 제시 - 단지내소음도를 65dB(A)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⑦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평가기준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교사내 소음 55dB(A) 이내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 일조장해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일조분석 대상의 선정 • 일조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장해 여부 파악 • 일조장해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일조분석 대상 선정 • 등시간일영도 등 영향권분석도 제시 • 주거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층별 세대별 분석(지번 제시, 학교의 경우 운동장 포함) • 지번도 및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 영향권내 비대상 지점에 대한 사유 제시(용도 등) ②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량적인 일영범위 및 영향 정도 분석 • 동지일 기준 주변지역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복합일영 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 분석 • 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창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한 상세 분석 • 일조영향 분석과정 제시 - 입력자료, 백데이터, 음영길이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시 • 분석지점 및 시점(동지일)에 대한 일조조건 제시 - 일적위, 남중시 태양고도 등 • 사업시행전후의 시간별 일영전개도 제시 • 분석지점별 총가조/연속가조 시간을 표 및 그래프로 제시 - 수인한도 불만족지점 뿐만 아니라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기존 침해세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③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 건축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 다수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과정 제시 ④ 사업시행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 건축물의 외장재 사용에 따른 일몰 및 일출시 건축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한 영향 검토 • 건축물 햇빛반사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근거 제시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기준	•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일조권 침해 기준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에 미달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중 일조시간이 총 최소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 일조장해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대책 수립으로 영향 최소화 • 눈부심 여부 및 최소화 대책 수립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차. 위락·경관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사항	• 건축물 입지로 인한 주변 경관변화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압감, 차폐감 검토 • 가로 녹시율 변화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기존 건축물 및 인접 가로경관 현황 조사 ② 경관변화 검토 • 경관시뮬레이션(건축 전·후 대비 사진합성) 기법을 이용한 가로경관 변화 및 스카이라인 변화(자연 및 인공)를 포함하는 경관 변화의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 - 도시지역임을 감안한 근경·중경·원경 다수의 조망지점 선정 분석 -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주변과의 조화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 사업시행후 경관에 주변 신축중이거나 계획중인 건축물을 고려하여 검토 - 남산 등 주요경관 침해여부 및 문화재 주변 도시환경 침해여부 검토 -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가각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 경관 침해 여부 검토 -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건축물의 수치자료 제시 - 영향예상시 다수의 대안 마련 및 최적안 선정과정 제시 ③ 위압감·차폐감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조망점은 위압감, 차폐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가시권을 분석후 인접 도로, 도로 결절점에서의 차량 운전자, 보도 보행자, 주변 시설(상가 및 공공) 이용자 관점 등을 감안하여 선정 분석 •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검토 • 통경축 검토 • 영향예상시 저감대책 마련 ④ 가로녹시율 분석 • 차도 및 보도의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검토 및 사업 전·후 가로 녹시율 변화의 예측분석 - 식재계획과 연계 - 가로별 복수 지점에서 대표 지점 선정 - 보·차도 구분 분석 - 촬영지점 및 소실점 위치 적정 선정 - 계획의 대상이 되는 측에 대하여만 평가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기준	• 경관 자원에 대한 조망 훼손(가시성) - 주변 경관과의 조화(높이, 형태, 배치, 규모, 색상 등)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 녹시율 최소 25% 이상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항목-3】

가.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기상개황은 최근 10년간의 기상 자료 분석 제시 ② 미기상 변화예측 •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최대풍속이 포함된 다양한 풍속 및 온도의 초기 조건이 고려된 경우의 미기상 변화 조사 및 비교 • ENVI-met Model 또는 기타 미기후와 풍환경 분석 수치모델 이용 -ENVI-met Model 적용시 경계조건, 연직격자 간격, 격자수 제시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 -사업지구를 둘러싼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한 AWS 자료 및 최소 8방위(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 풍향에 대한 분석 실시 • 분석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해 사업과 연계 분석 ③ 보행환경평가 •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 전·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의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중심반경 300m

나. 인구

구 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① 사업시행전·후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조사 및 예측으로 인구변화 추정 • 현황 통계자료는 통계자료 등 인용 •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근거 제시 •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검토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다. 교통

구분	평 가 사 항
평가내용	① 공사시 교통 저감대책 수립 •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② 사업지구 주변의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교통발생량에 따른 주변 가로망의 원활한 동선체계 정비계획 제시 및 검토 • 기존자료 조사·분석(도로 및 교통량 현황 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유발 교통량 예측·분석 • 도로 정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출·입동선 검토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03-2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포구 망원동 403-2번지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마포구 망원동 403-2번지	-	증3,152.4	3,152.4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8)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 (☎ 330-2054)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6호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1. 마포구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내 합정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합정4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4,95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상업지역	4,959	-	4,959	100	

다.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합정4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959	100.0	
정비기반시설(도로)	869	17.5	순부담률 : 14.63% (문화 및 집회시설 토지공유지분 포함)
대 지(확지)	4,090	82.5	

나) 정비기반시설계획(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304	합정동 383-18	합정동 385-50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2	집산도로	65	합정동 382-14	합정동 382-1	일반도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	2		8	국지도로	239	합정동 384-72	합정동 385-50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2	합정동 384-20	합정동 382-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2	집산도로	84	합정동 382-1	합정동 382-39	일반도로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	2		8	국지도로	109	합정동 384-20	합정동 384-72	일반도로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8	국지도로	79	합정동 382-16	합정동 382-21	일반도로	노선분리
신설	소로	2		8	국지도로	60	합정동 382-31	합정동 382-39	일반도로	신설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4,959.0	합정동 382-44번지일원	14	-	-	14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4,959	획지1	4,090	합정동 382-44 일원	53,216.89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733.72 이하	120 이하
			정비 기반 시설	869	-	-	도로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구역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전면 철거형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취약요인 없음	

5) 부문별계획

가) 대지내공지 계획

구 분	정 비 계 획	비 고
공개공지	○양화로변에 설치 (건축물 전면부 설치)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정 비 계 획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양화로) 및 도로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라.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 (☎330-206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0호

2008년도 제9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08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5심의일시 : 2008. 6. 18(수)
14:00~16:50

나. 심의장소 : 시청 별관 1동 4층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15 건 15작품[조각 14, 기타(점토도자 1)]

라. 심의결과
○ 승 인 : 8개 작품[조각 7, 기타(점토도자 1)/ 조건부 승인 포함]
○ 재 심 : 7개 작품(조각 7)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기획담당관 (☎ 02-6361-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제9차 심의위원회 - 2008. 6. 18. (수)】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1	구로구 구로동 685-204	조각	보금자리	재심	안전문제 고려할 것, 환경과 불일치
2	서초구 서초동 1301-6,7호	조각	내기억속의 동산	재심	화강석과 스텐레스의 부조화
3	종로구 신문로1가 197번지	기타 (점토도자)	지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조건부 승인	실제 설치물과 동일하게 제작 ※ 도면에 예시된 작품(사각모양) 색채와 동일하게 제작
4	성북구 삼선동 412번지 일대	조각	거북이의 꿈	조건부 승인	조명 설치 이동 후 재조정
5	성북구 하월곡동 33번지 일대	조각	순환-주사위	조건부 승인	아크릴 용접부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6	은평구 구산동 산61-15일대	조각	무지개꽃	조건부 승인	어린이의 안전성 고려할 것, 각진부분 부드럽게
7	은평구 진관외동 2지구 1블록	조각	우주의 샘	조건부 승인	별자리 페인트 부분 배제 - 음각으로 표시
8	은평구 진관외동 2지구 12블럭	조각	리뉴	승인	
9	은평구 진관외동 2지구 13블럭	조각	바람부는 날에	재심	기반 좌대 앉을 수 있도록 제안
10	동대문구 용두동 90-3번지외 149필지	조각	행복한 시간	재심	작품변경 요망
11	영등포구 대림동 1101-13외 23필지	조각	축제	재심	창의성 결여, 작품변경 요망
12	서초구 방배동 998번지	조각	기다림	재심	작품변경
13	구로구 신도림동 338번지 일대	조각	Harmony-08	승인	
14	강동구 암사동 414-2호외 6필지	조각	어머니의 산	승인	
15	동작구 동작동 326번지 (동작주차공원내)	조각	자유와 평화의 비상	재심	독창성 결여, 재심요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52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13호
3. 처분원인 : 명의이용금지위반(서부경찰서 적발통보)

4. 처분의 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위반내용 (근거)	행정처분 내용 (면허 취소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2자5570 (51459)	최주성	610109-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56월계2단지주공(아)201동1008호	명의이용금지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13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2008. 6. 16.)

5. 공고기간 : 2008. 7. 10. ~ 2008. 7. 24.(14일간)
6. 게시장소 : 서울시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02-6321-4263, FAX02-3703-9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5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계획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해제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문화재 지정 해제 계획

해제종별	해제 문화재명	해제 수량	소재지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239호	학림옥로 권9~11 (鶴林玉露 卷9~11)	1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4-10	황송환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240호	서대문 권1~6 (書大文 卷1~6)	2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4-10	황송환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241호	묘법연화경 권5~7 (妙法蓮華經 卷5~7)	1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4-10	황송환	
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 41호	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판화	1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4-10	황송환	

2. 해제사유 : 황송환 소장 <학림옥로> 등 문화재 4점은 지정신청 당시 강원도 원주시 무릉박물관 소장유물이었으므로 서울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함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71-2595
        ② 팩스 : (02) 2171-2589
        ③ 우편 : (100 - 75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 중랑구 문화체육과
        ① 전화 : (02) 490-3411
        ② 팩스 : (02) 490-3649
        ③ 우편 : (131-701)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화재 해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2171-2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공고 제2008-125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등록 내역

연번	업종	명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따로붙임	공고내역	참조	

연번	업종	명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소재지	자본금(천원)
1	부동산개발업	㈜에이케이네트워크	심상보	08-06-04	서울 080389	서초구 서초동 1337-32 광일빌딩 17층	2,000,000
2	부동산개발업	로빈주택㈜	함종희	08-06-04	서울 080390	강남구 역삼동824-11 한라클래식 오피스텔606호	500,000
3	부동산개발업	하우텍씨엔알건설㈜	하동규	08-06-05	서울 080391	강남구 삼성동65-11 삼경빌딩2층	600,000
4	부동산개발업	(주)한동엔지니어링	최용수	08-06-05	서울 080392	송파구 방이동 191-4 청라빌딩 6층	500,000
5	부동산개발업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호	08-06-09	서울 080393	강남구 역삼동770-9	500,000
6	부동산개발업	㈜강해림	안현식	08-06-09	서울 080394	강남구 신사동645-16 미소빌딩 지하1층	500,000
7	부동산개발업	㈜노바시티	김종열	08-06-09	서울 080395	마포구 합정동 369-14 해명빌딩 3층	500,000
8	부동산개발업	대무건설㈜	김상전 박대순	08-06-09	서울 080396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17 정호빌딩 3층 302호	500,000
9	부동산개발업	㈜크라운뷰	김건남	08-06-09	서울 080397	양천구 신정동 944-3 클레버타워 809호	500,000
10	부동산개발업	광솔산업개발㈜	홍권희	08-06-10	서울 080398	강남구 대치동944 삼흥제2빌딩 12층	500,000
11	부동산개발업	늘푸른건설㈜	김진용	08-06-11	서울 080399	강남구 역삼동702-10 아남타워1310	800,000
12	부동산개발업	㈜투위너스	천옥순	08-06-12	서울 080400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상가 303호	500,000
13	부동산개발업	저스트알㈜	홍성진	08-06-12	서울 080401	강남구 역삼동706-9 일상빌딩	1,000,000
14	부동산개발업	건설공제조합	최영철	08-06-12	서울 080402	강남구 논현동71-2	1,438,918,125
15	부동산개발업	㈜미소인	박영미	08-06-12	서울 080403	강남구 신사동645-16 미소빌딩 2층	500,000
16	부동산개발업	㈜우진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병림	08-06-13	서울 080404	강남구 청담동2-18 우진빌딩 4층	500,000
17	부동산개발업	청광건설㈜	허숭	08-06-13	서울 080405	서초구 양재동 316-4	3,700,000
18	부동산개발업	청광종합건설㈜	허숭	08-06-13	서울 080406	서초구 양재동 316-4	5,000,000
19	부동산개발업	(주)피에스아이비	조기현	08-06-17	서울 080407	서초구 서초동 1535-3 선흥빌딩 3층	1,000,000

연번	업종	명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소재지	자본금(천원)
20	부동산개발업	㈜인엔드아웃	김혜숙	08-06-17	서울 080408	서초구 잠원동 21-2	500,000
21	부동산개발업	정인개발㈜	이의신	08-06-18	서울 080409	강남구 삼성동144-4	500,000
22	부동산개발업	㈜대경종합건설	이민형	08-06-18	서울 080410	강남구 대치동912-18	4,000,000
23	부동산개발업	에스앤씨프러퍼티㈜	장영호	08-06-19	서울 080411	서초구 서초동 1554-15 에스엠빌딩 7층	500,000
24	부동산개발업	㈜케이티이십일개발	김성만	08-06-23	서울 080412	강남구 청담동132-19 정화빌딩806	500,000
25	부동산개발업	㈜우신씨앤아이	박혁	08-06-24	서울 080413	강남구 역삼동646-15 우신빌딩18층	950,000
26	부동산개발업	㈜우남씨오알피	오경종	08-06-24	서울 080414	강남구 논현동231-13 팍스타워 에이동14층	800,000
27	부동산개발업	㈜다우컨퍼런스	조의운	08-06-24	서울 080415	강남구 삼성동154-8 씨엔에이치빌딩2층	500,000
28	부동산개발업	㈜코비디앤시	최석주	08-06-25	서울 080416	강남구 역삼동654-3 프라자654빌딩 603호	500,000
29	부동산개발업	㈜키이스트	표종록	08-06-25	서울 080417	강남구 청담동41-2 금하빌딩16층	6,322,080
30	부동산개발업	㈜샘스	이재돈	08-06-26	서울 080418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2,135,000
31	부동산개발업	(주)엘에스엘이스테이트	이임호	08-06-26	서울 080419	강동구 성내동 455-2 덕창빌딩 2층	500,000
32	부동산개발업	(주)쎄데코	박만길	08-06-26	서울 080420	송파구 가락본동93-11 을지빌딩 2층	800,000
33	부동산개발업	장생에이스하우징㈜	김정미	08-06-26	서울 080421	영등포구 문래동4가 7-6 문래빌딩 3층	500,000
34	부동산개발업	(주)한울지앤씨	김기수	08-06-26	서울 080422	관악구 봉천동1598-20 4층	600,000
35	부동산개발업	㈜리버칠십이	김승영	08-06-26	서울 080423	강남구 신사동587-14,15	500,000
36	부동산개발업	삼성중공업㈜	김징완	08-06-27	서울 080424	서초구 서초동 1321-15	1,154,951,155
37	부동산개발업	도양건설㈜	이대교	08-06-27	서울 080425	양천구 신정동 978-2	810,000
38	부동산개발업	희재산업개발㈜	이형재	08-06-27	서울 080426	강남구 역삼동732-14 역원빌딩203호	50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63호

패션디자인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및「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8 - 1호
2. 허가년월일 : 2008년 6월 30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산업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5. 대 표 자 : 허 남 희
6. 설립목적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문화 예술 이념을 토대로, 국내외 실무 경험자 및 학계와의 연계로 세계적 패션 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의 패션산업 정책 및 지식의 공유와 창조적인 디자이너 활동 대안 제시 및 육성을 통해 패션디자인산업에 기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64호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제1항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동법 시행규칙제40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54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현황

구분	처분대상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감리전문회사	파슨스 브랑커호프 아시아 리미티드	강남구 청담동 53-8	업무정지 1월 ('08.07.10~'08.08.09)	-원주시 단계동 877-1 지상에 건축중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가 설계변경허가없이 지하2층~지상10층1,241.91㎡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허가권자인 원주시에도 보고하지 아니 하는 등 건축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 별표17 제11호
상주 감리원	김영택 (**0116-1******)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104동 206호	업무정지 15일 ('08.07.10~'08.07.24)	-원주시 단계동 877-1 지상에 건축중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상주감리원으로서 건축주와 시공자가 설계변경허가없이 지하2층~지상10층 1,241.91㎡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허가권자인 원주시에도 보고하지 아니 하는 등 건축법제 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6 제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7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여부 심의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여부를 심의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지정 명칭	신청자(기능 보유자)				조사자 의견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은공장	이정훈	남	1955.4.3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90 주공아파트 406동 707호	○ 신청자의 기술 전승계보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신청자가 제작한 각종 은세공품이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하였던 품목과 기법이 일치하며 전통기법으로 은세공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 전통 은세공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표현기술과 조형감각 기량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전통 은세공 기술의 전승보전이 필요하며 ○ 또한, 은공장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은공장은 1996.12.31자로 종목지정이 되어 있으나 보유자 사망으로 보유자는 없으며 지정명칭은 은공장으로 하되 기능을 "세공"으로 구분 하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2.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의견 제출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서 제출자(단체)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4. 연락처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 전 화 : 02-2171-2587 / 팩 스 : 02-2171-25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79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등록일자
서울E-3-112	(주)한빛 티이씨	백승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1	110111-3878191	전문설계업(2종)	'08.7.03
서울S-2-303					전문감리업	
서울S-2-304	(주)삼경 티이씨	안윤기	동대문구 용두동 233-21	110111-3897191	전문감리업	〃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13397	(주)노아테크놀로지	장재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타 22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2	111118	갑일전자통신	황상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39-1 동화빌딩201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3	111648	(주)시스월	김연수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4	111188	(주)아빅스테크	장주홍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5번지 10호 아빅스빌딩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5	111959	나인에스솔루션(주)	강달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6-5 신아빌딩 3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6	110583	케이씨씨정보통신(주)	이상현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0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8.7.11~8.25)
7	110940	(주)케이티에스네트	정양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04-1 송구빌딩 4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8	111646	(주)시스원	정만진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0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8.7.11~8.25)
9	112212	(주)진흥월드와이드	이창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703-1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0	111240	우전시스텍(주)	권영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3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1	111752	제이씨현시스템㈜	차현배	서울 용산구 신계동 6-1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8.7.11~8.25)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2	200124	신성전기㈜	김상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3	200136	알카넬루센트서브마린네트웍스마린에이에스	차석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5층 501-3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4	113398	진흥통신전기(주)	박현봉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7-23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5	113421	사이버씨브이에스(주)	김경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7.11~10.10)
16	111526	씨제이파워넷(주)	오수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 1309호	법인합병 신고지연	영업정지1월 (08.7.11~8.10)
17	113262	(주)디엠엑스테크놀로지스코리아	김민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2	기준미달 (기능계1)	영업정지1월 (08.7.11~8.10)
18	110635	(주)대성네트웍시스템	김태완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8-6 청봉빌딩 201호	기준미달(기술계3,기능계1)	영업정지1월 (08.7.11~8.10)
19	112839	(주)써클원	윤창선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6 영창빌딩 2층	기준미달 (기술계2)	영업정지1월 (08.7.11~8.10)
20	200774	유테라네트웍스㈜	김양강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0번지 심산빌딩 2층	기준미달(기술계1,기능계1)	영업정지1월 (08.7.11~8.10)
21	200295	에프엔티티㈜	문홍식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7 거북이빌딩 304호	기준미달 (기술계1)	영업정지 15일 (7.11~7.26)
22	200475	㈜대협파워텍	이영복	서울 중랑구 묵동 245-9	기준미달 (자본금실효)	영업정지1월 (08.7.11~8.10)
23	110622	(주)호서텔레콤	김낙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2-8호 호서빌딩 3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8.5.30~7.13)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66조제2호의3, 제66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8. 7. 1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4호

다단계판매업자 변경등록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변경등록신고

신고인				변경내역			변경일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구분	변경전	변 경 후	
제1호	(주)한국암웨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타빌딩	박세준	후원수당	쿠폰 미제공	갱신프로모션 달성자 대상으로 스폰서링 쿠폰 제공	'08.6.27
제651호	(주)베스트제닉 인터내셔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7 조선빌딩 4층	김경진	후원수당	기존 수당체계 완전 폐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유니레벨과 바이너리를 추가하되 유지, 마감, 프레시가 없으며 회사가 조직을 형성하는 초기에 회사로 귀속되는 영업지원금의 명목으로 35%의 한도내에서 전액을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함	'08.6.19
제659호	(주)하루애 생활건강	서울시 양천구 목동730-2 3층	남부현	상호	(주)이엠피플러스	(주)하루애생활건강	'08.6.09
				후원수당	보상플랜일부변경	판매원 기준 완화, 수당 신설	'08.6.19
제674호	(주)한국 엑스트라엑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 1704호	루이 강장	후원수당	스폰서링보너스 15% 신규마스터보너스 4% 합격마스터보너스 6% 리더십보너스 16%	소매이익(수당) 25% 직판보너스 3% 퍼포먼스 32% 어치브먼트보너스 20%	'08.6.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02-3707-8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10024	금화텔레콤㈜	노병찬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23 인스토피아 502호	기준미달(자본금)	등록취소
113340	㈜유디웍스	김진헌	서울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 3차 1108호	등록기준미신고	등록취소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11468	(주)신화이앤아이	진양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8 중앙로얄오피스텔 812호	기준미달(자본금)	등록취소
113232	㈜유리엘시스템	최준철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322-2 (201호)	등록기준미신고	등록취소
200509	(주)하나로유비쿼터스	이태철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5-5 도양빌딩 3층	기준미달(기술계3, 기능계1)	등록취소
113163	(주)광명제이씨	김정웅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531	기준미달(기술계2)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66조 제2호의3, 제3호, 제13호,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별표8
3. 행정처분 일자 : 2008. 7.10.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0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양도 · 양수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양도 · 양수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양도인	경기1-191	(주)반석이앤씨	임성무 강상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7동 218	134111-0133061	전문설계업(2종)
	경기2-284					종합감리업
양수인	서울E-2-282	(주)세흥이엔씨	고인숙 김태형	강남구 개포동 13-3	110111-1589980	전문설계업(1종)
	서울S-1-181					종합감리업

- 공고사항문의 :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5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37호

3. 처분원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안양경찰 | 서적발통보)

4. 처분의 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위반내용 (근거)	행정처분 내용 (면허 취소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1사6641 (29021)	유성호	670813-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9-2	운전면허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37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2008. 6. 26.)

5. 공고기간 : 2008. 7. 17. ~ 2008. 7. 31.(14일간)
6. 게시장소 : 서울시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02-6321-4263, FAX02-3703-9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08-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1. 서울시고시제590호('78.11.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제2008-209호(2008.04.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08-19호(2008.05.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08-29호(2008.06.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고시한 【숭인동 227-4앞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731-14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0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숭인동 227-4앞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개요

사 업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금회)	시설결정 고 시	지적고시	비고
종로구 숭인동 227-4번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숭인동 227-4앞 도로개설공사	B=6m, L=10m (B=3m, L=3m)	서울특별시고시 제590호 ('7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590호 ('78.11.08))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종로구 삼봉길 5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년
바. 변경내용 : 물건 및 영업권 조서의 변경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731-1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공 사 명 : 숭인동 227-4앞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1	종로구 숭인동 227-4	건물	세멘조/지상2층	13.8	전진규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04 기안파인 골드빌 109-603				종로구 숭인동 227-4	건물(1층)	세멘조	6.9	전진규	종로구 숭인동 227-4(2층)			
		담장	4*3 (벽돌)								건물(2층)	목조	6.9					
											화장실(1층)	세멘조	1식					
2	종로구 숭인동 226-1	건물	너비1.1*높이2.6(블록)	5.8	이재희	종로구 숭인동 226-1				종로구 숭인동 226-1	건물	함석/합판	2.8	이재희	성북구 정릉동 372-34			
		보일러 가스 배관		1식							셔터	스텐레스	1식					
		담장	1.5*1.0 (벽돌)	1식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															

변 경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공 사 명 : 숭인동 227-4앞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영업의 종 류	상호명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영업의 종 류	상호명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종로구 숭인동 227-4	음식점	꽃돼지네	1	현형자	종로구 숭인동 227-4				종로구 숭인동 227-4	음식점	꽃돼지네	1식	형형자	종로구 숭인동 227-4			
2	종로구 숭인동 226-1	사업장	서광	1	오재철	종로구 숭인동 226-1				중로구 숭인동 226-1	주방기구 제조업	서광종합 주방설비	1식	오재철	구로구 오류동 148-8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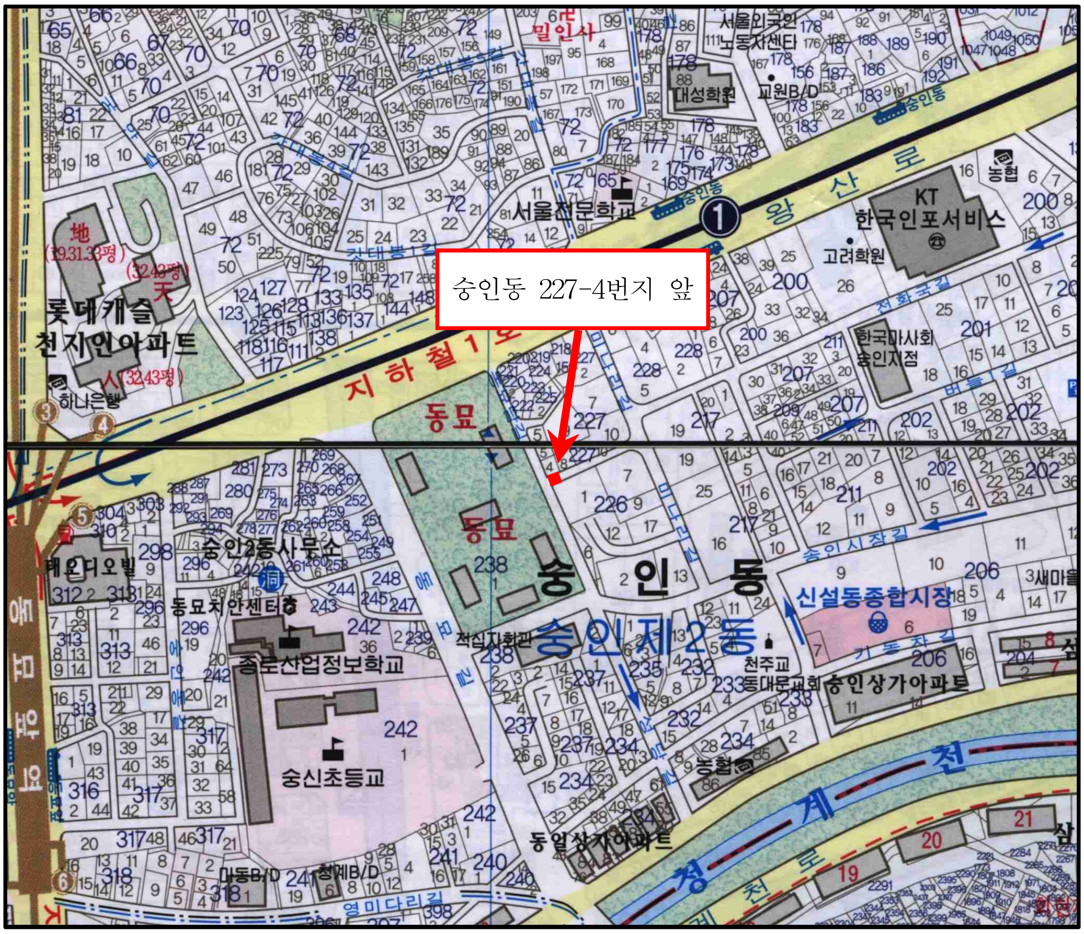

숭인동 227-4번지 앞
왕산로
지하철 1호선
동묘
숭인동
숭인제2동
서울전문학교
KT 한국인포서비스
고려학원
대성학원
한국마사회 숭인지점
롯데캐슬 천지인아파트
하나은행
숭인2동사무소
동묘치안센터
종로산업정보학교
숭신초등교
신설동종합시장
천주교
동대문교회
숭인상가아파트
동일상가아파트
농협
청계천
청계천로
밀인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교원B/D

◈ 중구고시 제2008-4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1호(2006.7.20)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7호(2007.10.25)로 만리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2가 176-1번지 일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중 구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부합 하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위치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계		69,054.1	-	69,054.1	100.00
	주거지역	소 계	64,990.9	증) 4,063.2	69,054.1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607.4	감) 2,607.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2,970.5	감)52,97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7,155.9	67,155.9	97.25
		제3종일반주거지역	9,413.0	감) 7,514.8	1,898.2	2.75
	상업지역	소 계	4,063.2	감) 4,063.2	-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 및 토지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2260-1765)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고시 제2008-43호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4호(2006. 7. 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성동구고시 제2006-5호(2006.10.31)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7-31호(2007. 6. 14)로 정비구역지정 변경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1호(2007. 7. 5)로 사업시행 인가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성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칭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00번지 일대
3. 사업구역면적 : 51,483.60㎡
4.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나 봉 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67번지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 총규모 등

- 토지이용현황

건축시설의 대지(㎡)		공공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도로	공원	소 계
35,575.60	4,828.70	8,502.10	2,577.20	11,079.30

- 건축시설 총규모

건축규모		아파트 공급내역(세대)				
동수	연면적(㎡)	계	조합원	일 반 분 양	보류 시설	임대 주택
11	162,209.95	1,057	778	33	36	210

나. 신설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류	명 칭	위 치(시점, 종점)	규 모	비 고
도 로	소로2-(1)	금호동2가 533 ~ 810	폭원8m, 연장: 375m	
	중로2-(1)	금호동2가 527-1 ~ 1006-1	폭원 8m, 연장:375m	
	중로2-(2)	금호동2가 937 ~ 810	폭원15m, 연장:277m	
	중로3-(1)	금호동2가 909-4 ~ 1188	폭원12m, 연장:281m	
	대로3-207	신당동 160-5 ~ 금호동3가 210	폭원25m, 연장:1,996(324)	
녹 지	어린이공원	금호동2가 1176번지 일대	2,577.20㎡	

다.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 류	위 치	규 모	면 적(㎡)	비 고
도 로	금호동2가 802번지 외 61필지		9,418.80	

◈ 성북구고시 제2008-7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920-3723)에 비치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제한지역
1) 구역명 :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일대
3) 면 적 : 51,190㎡

나. 제한사유

추후 결정될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경우 제한을 해제함

라. 제한대상 행위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포함)
4)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5)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마. 제외예상대상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바.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 강북구고시 제2008-3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229-30외 5필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지정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교통시설 (주차장)	수유3동 229-30외 5필지	385.4㎡	감)28.6㎡	356.8㎡	2007.11.29	

다.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 노원구고시 제2008-3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수락산역 주변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호 건축물의 건축 중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 제외)
3. 제한기간 : 2008. 7. 10. ~ 2011. 7. 9 (3년간)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는 경우에는 변경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4. 제한구역 및 범위

제 한 구 역	위 치	면적(㎡)	비 고
수락구역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신규편입 검토구역 포함	노원구 상계동 일대	100,000	제한구역은 비치 도면 참조

5. 고시 방법 : 서울시보,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예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 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심의 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7.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950-388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마포구고시 제2008-38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357 (2008. 6.12)호로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마포구 합정동 450-6번지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나.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 행 지	면 적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2) 사업의 명칭 - 합정동 450-6번지 지정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	마포구 합정동 450-6번지	1,20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고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27호(2008.5.29)	인가일로부터 2008.12.30

다.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 및 지목,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마.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붙임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비고 (지분)
동	지번					성명	주 소	
합정	450-6	임	1,204	1,204	임	차중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2 현대판테온 1010호	1,204분의 240.8
						차중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47 헌팅턴비취 탤림레인가 16052	1,204분의 240.8
						차중숙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4107호	1,204분의 240.8
						차중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31동 203호	1,204분의 240.8
						차중직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1-1401	1,204분의 240.8

◈ 양천구고시 제2008-2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양천구 목동 406번지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제1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에 의한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종전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양천구 목1동 406번지 일대(제1구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명칭 :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 19,910㎡

라. 사업규모
1) 주택용지 조성면적 : 16,835㎡
2) 공공시설 조성면적 : 3,075㎡
- 도 로 확 폭 : 1,596㎡(42m)
- 보행자전용도로 : 1,388.8㎡(폭 11m, 연장124m)
- 도로가각부정리 : 100㎡(2개소)
3) 공작물 설치내역
- 보행자 전용도로내 지하 연결통로 설치
• 부지면적 : 1,363.21㎡
• 시설면적 : 1,814.21㎡
• 규 모 : 지하5층~지하1층
• 구 조 : R.C조, S.R.C조
• 점용용도 : 지하부(보행 및 차량) 통로

• 설치면적 및 용도

구분	시설면적	비고
지하1층	460.60㎡	썬큰 및 보행통로
지하2층	461.71㎡	썬큰 및 보행통로
지하3층	297.30㎡	차량 및 보행통로
지하4층	297.30㎡	차량 및 보행통로
지하5층	297.30㎡	차량 및 보행통로
합계	1,814.21㎡	-

마. 행정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면적 : 3,011㎡(순부담율 15.12%)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조합장 김영서, 최을수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2005호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양천구고시 제2004-85호(2004.10.15)〕
- 준공예정일 : 2009.01.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별첨)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종전 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변경없음.(별첨)

차. 종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관계도서 :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2620-3531) 비치도서와 같음.

◈ 강서구고시 제2008-43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원에 추진중인 강서 도시정비·개발사업 예정지역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서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원 약 0.44㎢
2. 제한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원의 도시정비·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예상되는 지역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4. 행위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 2,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 2, 3,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83조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지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공공·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정비·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건축물대장의 합병 및 전환 포함)

5. 관계도서 : 생략〔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656)에 고시내용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08-44호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시 강서구고시 제2008-356호(2008. 05.07)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우리 구 외발산동 427번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우회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제3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폐지)	소로	1		10	국지도로	691	외발산동 104-14	외발산동 42-6	일반도로	-	1996. 12. 6	도로폐지

나. 변경(폐지) 결정 사유
   ○ 발산택지개발사업 완료됨에 따라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변경(폐지) 결정하여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족한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387) 비치도면과 같음.

◈ 강서구고시 제2008-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폐지)	공공청사	-	화곡동 1059-3	279.2	감)279.2	0	건설부공고 제8호 (1968.1.23)	
변경(폐지)	공공공지	-	공항동 687-14	165.3	감) 165.3	0	서고시 제360호 ('86.6.2.)	적환장

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고시 제2008-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서울교육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5호(1972.11.2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1996-59호(1996.03.06.)호로 변경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도시계획 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서울특별시도시 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계획과(☎ 570-63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내 층별 세부용도 지정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라. 사업규모
1) 사업시행면적 : 86,349.90㎡
2) 건축면적 : 18,278.68㎡
3) 건축연면적 : 59,257.53㎡
4) 변경내역

건물명	층수	층별면적(㎡)				비고
		당 초		변 경		
		면 적	용 도	면 적	용 도	
제2미술관	1층	517.34	제2미술관	446.78	제2미술관	
				70.56	부대편의시설(휴게음식점)	
	2층	517.34	제2미술관	517.34	제2미술관	
	3층	517.34	제2미술관	517.34	제2미술관	
	계	1,152.02		1,152.02		

마. 변경사유
- 서울교육대학교내 제2미술관 1층의 우체국 공간을 폐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10일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서초구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공 고

◈ 마포구공고 제2008-425호

아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70호(1980.7.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72호(2007.9.27)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아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획 중 27, 28, 38 ~ 48구획』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마 포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아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나. 면 적 : 65,372.3㎡ 중 44,671.8㎡(2차 관리처분 지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마포구청장 (마포구 성산동 275-3)
4. 사업기간 : 1977.4.1 ~ 2009.12.31
5. 공사 내역
   ○ 토 지 현 황 (27, 28, 38 ~ 48구획) → 2차지역

(단위:㎡)

구분	계	일반지	분양지	유보지	체비지	도로	녹지	비 고
면적	44,671.8	29,131.8	943.8	409.1	145.8	13,908.9	132.4	

6. 공람기간 : 2008.7.10 ~ 2008.7.25(14일간)
7.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공고 제2008-4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869호(1986.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어 동작구고시 제2007-90호(2007.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한『사당동 147-6~148-2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5호(2008.5.29)로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인 동작구청 토목과(☎820-9907)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공고 기간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1) 당초 : 사당동 148-22 ~ 148-41간
2) 변경 : 사당동 148- 9 ~ 148-4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동 없음
다. 사 업 명 : 변동 없음
라. 면적 또는 규모
1) 당초 : B=6m, L=138m
2) 변경 : B=6m, L=170m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동 없음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변동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변동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사당동147-6 ~ 148-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성 명	주 소	
1	사당동 145-6	도로	73	73	서울특별시					당초
		도로	73	67						변경
2	사당동 144-2	도로	109	109	서울특별시					당초
		도로	129	123						변경
3	사당동 735-1	도로	817	40	국(건설부)					당초
	사당동 735-3	도로	40	40						변경
4	사당동 148-14	도로	165	162	신용철	서초구 방배동 948-27호 1층 101호				당초
	사당동 148-36	도로	162	134						변경
5	사당동 708-552	도로	805	27	국(건설부)					당초
	사당동 708-1161	도로	27	27						변경
6	사당동 708-436	도로	902	469	국(건설부)					당초
	사당동 708-1164	도로	469	469						변경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성 명	주 소	
7	사당동 708-1163	도로	67	67	국(건설부)					추가
8	사당동 708-552	도로	713	70	국(건설부)					추가
9	사당동 708-436	도로	321	89	국(건설부)					추가
10	사당동 735-2	도로	8	8	국(국설부)					추가
11	사당동 148- 8	잡종지	201	5	전영자	사당동 148-22				추가
12	사당동 148- 9	대지	194	3	임태환	사당동1149 사당롯데캐슬 아파트 201동 801호	근저당권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번지 (덕수궁지점)	추가
13	사당동 147-82	대지	578	2	손정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9번지 1호 (서초구 방배동 799-9 케슬렉스 401)	근저당권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번지 (사당동지점)	추가
14				1			전세권	두산건설주식 회사	강남구논현동 105-7	추가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사당동147-6 ~ 148-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사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명세	성 명	주 소	
1	사당동 148-16	건물1층	연와조 벽돌조	3㎡	점포	장숙녀	사당동 143-4				제외
		건물2층	연와조 벽돌조	2㎡	주택						
2	사당동 148-21	건물1층	벽돌조 슬래브	9㎡	점포	임태심	사당동 148-21				제외
		건물2층	벽돌조 슬래브	6㎡	주택						
3	사당동 148-22	담장	시멘트 및 철재	1식	담장	홍창수	강북구 수유동 93-8				당초
						전영자	동작구 사당동 148-22				
					정화조	홍창수	강북구 수유동 93-8				추가
						전영자	동작구 사당동 148-22				
4	사당동 148-9	정화조	콘크리트	1식	정화조	임태환	사당동1149 사당롯데캐슬아파트 201동 801호	근저당권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덕수궁지점)	추가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사당동147-6 ~ 148-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사당동 148-16	영업권	미니 슈퍼	1식	슈 퍼	남기식	사당동 148-16	제 외
2		영업권	혜 성 암	1식	종 교	문은희	사당동 148-16	
3		영업권	대청 마루	1식	음식업	이화숙	사당동 156-19번지 3층	
4		영업권	먹거리분식	1식	휴게업	서경순	사당동 64-141	
5	사당동 148-21	영업권	돼 지 굴 뚝	1식	음식업	김순자	사당동 1140번지 삼성아파트 108호	
6		영업권	홍 미 닭 발	1식	음식업	정운현	강서구 화곡7동 352-48번지 502호	
7		영업권	이수 황제곱창	1식	음식업	조성운	사당동 153-1번지 102호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1척, 부선1척)	가양대교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선박운항	2008. 6. 30. ~ 2008. 7. 15.	2008. 6. 27.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차수과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길 544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7척 (기선2척, 부선5척)	상수원 취수장주변 준설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 7. 1. ~ 2008. 12. 31.	2008. 6. 30.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광장티엔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65-1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4-2번지상 한 강	1,200㎡ (부선2척)	공사용선박 정박대기장소에 따른 토지점용	2008. 07. 01. ~ 2008. 12. 31.	2008. 6. 30.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대로 1160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3척 (기선1척, 부선2척)	동호대교 및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선박운항	2008. 7. 7. ~ 2008. 9. 30.	2008. 7. 7.

사업소공고

◈ 양천소방서공고 제2008-7호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처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양 천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양천2008-3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새암소방 시스템	박 근 제 (700419-1******)	서울 양천구 오목로 261 (신월2동 505-4)	2008. 7.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653-6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공고 제2008-8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서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서2008-5호 (2008.06.30)	주식회사 그린빌더스 (110111-3874892)	구 성 회 (1972.12.15)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28-22	☎2668-673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8-2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적용법규 정정 행정처분(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사목(4)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구 로 소 방 서 장

□ 적용법규 정정전 : 소방공사감리현장 책임감리원 미배치(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처분사유	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용법규
(주)신화에프이씨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512호) (☎ 2113-7900)	손병철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제구로99-1호) (1999.3.20)	소방공사현장 책임감리원 미배치	제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월) (2008.07.10 ~ 2008.10.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18조 제1항 동 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사목(12)

□ 적용법규 정정후 : 소방공사감리현장 업무대행자 미배치(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3항)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 번호 및 일자)	처분사유	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용법규
(주)신화에프이씨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512호) (☎ 2113-7900)	손병철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제구로99-1호) (1999.3.20)	소방감리현장 업무대행자 미배치	제1차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16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제9조[별표 1] 제2호 사목(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2682-50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8-1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 일자
1	제영등포 2008-2호	소방시설 관 리 업	주식회사 온누리 에프엔에스	최 승 만 (5905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 2-3층 (☎02-2678-4119)	2008. 7. 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1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08-15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제서초 2008-1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대호방재 (114-09-36682)	장 경 남 (750210-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41-32 지층	2008. 7. 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8-28호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규칙 제3조 제3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강 남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강남2008-27호 (2008.7.04)	(주)오성엔지니어링 (110111-0508981)	권 태 정 (1949.2.09)	강남구 대치동 1022 - 2	567-0826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제강남2008-2호 (2008.7.04)	우리방염 (220-07-46778)	장 호 철 (1978.5.27)	강남구 개포동 1257-6 남성빌딩 302호	3463-4119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서울특별시보 2846호(2008.6.30) 3쪽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규칙 제3624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정정전>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클린도시 담당관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94조 제1항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구청장

<정정후>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클린도시 담당관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제8호(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구청장